

地域物價統計 및 서어비스業統計作成方法

- 日本, 臺灣, 말레이시아를 中心으로 -

1987. 12.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032032

地域物價 및 서어비스業統計 作成技法 海外研修報告

○ 研修者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書記官 崔 燉 哲

” ” 5 級相當 朴 鶴 龍

○ 研修機關

- 日 本：總理府 統計局

- 臺 灣：行政院 主計處

- 말레이시아：統計局

○ 研修內容 및 日程

1987.11. 1 서울出發 - 臺灣到着

1987.11. 2 - 11. 5 臺灣行政院 主計處 訪問

- 面談者：第3局 局長(韋 端)

第3局 課長(韋炳珍)

第4局 編審(陳雅喬)

主計處 課長(黃壽椿)

- 討議內容：・臺灣 消費者物價 作成方法

・臺灣 都賣物價 作成方法

1987.11. 6 臺灣出發 - 말레이시아到着

1987.11. 7 - 11.11 말레이시아 統計局訪問

- 面談者：統計調整官 Ganapathy

- 討議內容：・1984年 서어비스業 센서스 調査計劃 및 調査方法

・現行 消費者物價指數 作成現況 및 作成方法

1987.11.12 말레이시아出發 - 日本到着

1987.11.13 - 11.14 日本 總理府 統計廳 訪問

- 面談者：總務課長 (小山弘彦)

統計調査部長(船律好明)

調査官 (大槻義雄)

消費統計課 (松井博)

經濟統計課 (態谷長一)

” (石井達男)

- 討議內容：・ 1985年 基準 消費者物價指數 作成現況 및 作成方法

・ 1987年 全國物價統計調査 作成現況 및 作成方法

目 次

(日 本)

I. 消費者物價指數(1985年基準)	5
1. 消費者物價指數의 基準時 改編	7
가. 改編의 趣旨	7
나. 主된 改編內容	7
2. 消費者物價指數의 沿革	18
(改編 年度別 比較表 收錄)	21
3. 消費者物價指數의 概要	25
가. 指數의 性格	25
나. 指數 算式	25
다. 基準時 및 加重值	25
라. 指數品目	26
마. 價格資料	26
바. 市町村別 比較時 價格	27
사. 基準時 價格	29
아. 加重值	29
자. 指數의 計算	34
차. 季節調整指數의 作成方法	36
카. 指數의 作成系列	36
타. 指數의 公表	38

Ⅱ . 全國物價統計調查(1987 年)	41
1 . 調查概要	43
가 . 調查目的	43
나 . 調查時期	43
다 . 調查對象 및 範圍	44
라 . 調查對象品目 및 品質規格	45
마 . 調查事項	47
바 . 調查方法	49
사 . 集計事項	51
아 . 結果利用	52
자 . 機密保護	53
2 . 調查要領	54
가 . 調查員事務의 概要	54
나 . 調查方法	56
(1) 調查店舖 確認	56
(2) 調查票 配布前 準備	57
(3) 調查票 配布와 記入依賴	57
(4) 調查票 蒐集 및 檢査	59
(5) 調查票 蒐集後 再檢査	60
(6) 調查關係書類의 整理와 提出	60
다 . 調查票 各欄의 記入方法	61
(1) 事業體 調查票	61
a) 調查員이 記入하는欄	61

b) 店舖가 記入하는欄	62
(2) 價格 및 數量等 調査票	68
a) 調査員이 記入하는欄	68
b) 店舖가 記入하는欄	68
라 調査票 內容의 檢査要點	73

(말레이지아)

Ⅲ. 專門職 및 機關別 서어비스業 센서스 (1984 年)	79
1. 調査要綱	81
2. 調査範圍	83
3. 調査構造	85
4. 調査方法	87
5. 調査對象期間	88
6. 機密維持	89
7. 調査單位	89
8. 概念定義	89
Ⅳ. 主要 서어비스産業部門센서스 (1984 年)	95
1. 調査要綱	97
2. 調査範圍	98
3. 調査構造	101
4. 調査方法	102
5. 調査對象期間	103
6. 機密維持	103

7. 調查單位	103
8. 概念定義	103
 (自由中國)	
V. 臺灣의 都賣物價指數	105
1. 沿革	107
2. 目的 및 用途	108
3. 調查品目	109
4. 指數分類	109
5. 基準年度	109
6. 加重值	109
7. 價格資料	110
8. 指數試算	110
 VI. 臺灣의 消費者物價指數	 113
1. 沿革	115
2. 目的 및 用途	116
3. 調查品目	116
4. 指數分類	116
5. 基準年度	117
6. 加重值	117
7. 價格資料	117
8. 指數試算	118
 (附錄)蒐集資料 目錄	 121

I. 1985年 基準 日本消費者物價指數

1985年 基準 消費者物價指數

1. 消費者物價指數의 基準時 改編

가. 改編의 趣旨

消費者物價指數는 1945年 改編以後 다른 經濟指標와 같이 5年마다 改編되고 있으며, 1985年 改編은 前回改編年(1980年)과의 사이에 消費構造의 變化를 보다 正確히 反映하기 위하여 새로이 基準年度와 加重值를 作成함과 同時, 品目の 追加 및 廢止를 行하여 指數改編을 하기로 한 것임.

나. 主要改編事項

今回(1985年 基準)의 主된 改編事項은 1970年 以來 參考系列로서 作成하여온 「自家의 歸屬家賃을 包含한 總合指數」를 總合指數로 하는 것과 衣類, 冷暖房用器具等 市場으로 出廻하는 季節的인 品目(新鮮食品除外)에 대해서 加重值의 實質的인 固定化를 圖謀한 것을 들 수 있다. 今회의 改編事項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基準時 및 加重值

基準時 1980年에서 1985年으로 改編함과 同時에 加重值의 算定期間도 1980年에서 1985年으로 改編했다. 但, 新鮮食品에 대해서는 月別로 다른 加重值를 使用하지만 이 月別 加重值의 作成에 있어서도 1984年 및 1985年の 購入數量을 利用하고 있다.

(2) 指數品目の 追加 및 廢止

指數品目は 最近의 消費構造를 보다 明確히 反映하기 위하여 消費支出上에서 重要도가 높은 品目, 指數의 精度를 向上시키기 위한 品目を 45個 追加하였으며 重要도가 낮아진 17個 品目を 廢止하여 總 540個 品目으로 하였다.

(追加品目の 選定基準)

- (가) 現行中 分類指數中에서 代表도가 낮은 分類에 대해서 그 代表度を 될 수 있는한 높게 하는 品目
- (나) 新製品의 出現, 嗜好의 變化等에 의한 消費構造의 變化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品目
- (다) 圓滑한 價格調査가 可能하고 또 價格變化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品目

(廢止品目 選定基準)

- (가) 消費構造의 變化等에 따라 代表도가 喪失되어 가고 있는 品目
 - (나) 他品目の 價格變動으로 代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品目
- 追加品目 및 廢止品目は 다음과 같다.

[追加品目 - 45個品目]

- 食料 : 스파게티, 생중화면, 다랑어통조림, 요구르트, 메론, 후추가루, 액체조미료, 도시락, 만두, 조리카레, 커피(원두), 생과자
- 光熱·水道 : 下水道料

- 家具・家事用品：룸에어콘(冷暖房兼用)，유연임상제
- 被服・衣類：원피스(上下服，冬服)，셔츠(上下服，夏服)，치마(夏服)，婦人바지(진種類)，女子學生服，女兒치마(冬服)，스포츠셔츠(반팔)，婦人브라우스(반팔)，婦人티셔츠(긴팔，반팔)，男子양말(겨울용)，벨트
- 保健・醫療：漢方藥，맞사지料金
- 交通・通信：車庫借料，駐車料金，自動車保險料(任意)，運送料(집배달)
- 教養・娛樂：전자울건，비디오테이프레코더(VTR)，애완용동물먹이，남시대，學院費(音樂)，골프練習料，遊園地入場料
- 諸雜費：電氣먼도기

[廢止品目：17 個品目]

- 商品의 多樣化에 따른 嗜好의 變化品目：일반미^{*1}，고등어통조림，단메주콩^{*2}，運送料(鐵道)^{*2}，運送料(自動車)^{*3}
- 普及率이 낮아 代表性이 缺乏된 品目：연탄，婦人服
- 다른 商品의 價格움직임으로 代替되는것：牛乳(구멍가게 판매：병들이)^{*4}，간장(地方商品)，冷凍調理만두，婦人用雨衣，바바리코트，婦人服地(木綿)，면도날
- 季節衣類品의 景氣가 좋아진 것：치마(上下服)，셔츠(冬服用)

* 1 : 쌀의 85 年基準 採擇品目：指定產地米，上米，中米，玄米，標準價格米

* 2 * 3 : 運送料(鐵道)，運送料(自動車)를 廢止하고 運送料(집배달)을 追加

* 4 : 牛乳의 85年基準 採擇品目 : 牛乳 (配達) , 牛乳 (店舖 : 종이 용기들이)

(3) 自家의 歸屬家賃에 따른 總合指數의 變更

消費者物價指數에는 住宅購入에 關係되는 費用도 反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根據로 하여 왔고, 1970年 基準에서 「自家의 귀속가임 (歸屬家賃) 을 包含한 總合指數」를 參考系列로 하여 作成, 公表하여 왔음. 여기서 自家의 歸屬家賃이란 現行的 家計調査에서는 自家世帶의 住宅에 關係되는 費用으로서, 設備, 修繕이 記錄될 뿐이며, 住宅의 購入에 關係되는 費用은 財産購入에 計上하고, 消費支出에는 計上되지 않지만, 自家住宅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所有住宅에서 얻어질 서서비스를 消費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 서서비스額을 一般市場價格으로 評價한 것이다.

今回の 改編에 있어서도 「自家의 住宅費用을 包含한 總合指數」가 보다 包括的이었으며 先進諸國에 있어서도 이것을 包含하는 쪽이 大部分이라는 것, 또한 이것은 作成開始後 15年을 經過하여 時系列的으로 利用하게 되어 指數로서 定着하여 왔다는 點을 考慮 從來의 「自家의 귀속가임 (歸屬家賃) 을 包含한 總合」을 「總合指數」로 하기로 함.

(參考) 諸外國에서 「自家의 住宅費用을 指數에 採擇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自家를 借家 베이스로 評價하고, 指數에 算入하는 歸屬家賃方式을 採擇한 國家.

美國, 獨逸, 네덜란드, 핀란드 等 18個國

- 住宅購入價格을 直接 指數에 算入하는 方式을 採擇한 國家
호주 等 3個國
- 住宅의 原價償却費를 指數에 算入하고 있는 方式을 採擇한 國家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等 3個國
- 住宅의 利子, 住宅保險, 賃借料 等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어
떠한 方式으로 計算해서 指數에 算入하는 方式을 採擇한 國家
英國,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等 8個國

(4) 新鮮食品을 除外한 季節品目的 市場出廻期間外에 있어서의 價格保合

1980年 基準 消費者物價指數에 있어서는 新鮮食品以外의 品
目을 固定 加重値에 따라 指數計算을 實施하여 왔음. 그러나 衣
類 및 冷暖房用 器具中에서 出荷의 時期를 價格調査月로 하고
通年(普通)調査가 實施되지 않은 品目에 대해서는 價格調査月
以外의 月은 一般的인 價格을 얻지 못하여, 當該 品目的 加重値
가 다른 調査月の 品目に 分配되어 當該 品目を 包含하는 類
에 結果적으로 變動 加重値로 되고 있다. 이때문에 嚴密한 意
味에서의 指數의 前月 比較를 보는 것에도 不合理的 點이 있
다. 이 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1985年 基準 消費者物價指數에
있어서는 上記와 같은 品目的 價格調査月以外 月の 價格은 價
格調査月 價格의 月別平均價格으로 代替하고(이것을 比較時 價
格으로서) 一年을 通해서 價格이 얻어지도록 하여 加重値의 實
質的인 固定化를 圖謀했다.

아래의 計算例와 같이 例를들면, 8月の 洋服의 指數를 算出

하는 경우, 먼저 季節的인 出荷가 없는 紳士服(冬服用)과 男子바지(冬服用) 등의 價格을 얻지 못하는 겨울용의 品目指數는 除外하고, 紳士服(夏服用)과 男子바지(夏服用) 등으로 여름용의 品目指數를 加重平均하여 男子洋服의 指數를 計算하고, 같은 方法으로 해서 婦人服 및 兒童服의 指數를 計算한뒤, 이들의 指數值를 使用해서 加重平均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80年 基準의 8月 洋服의 指數는 價格이 낮아지고 있는 夏服用으로 代表되며, 逆으로 10月은 價格이 上昇하는 冬服用으로 代表되는 것이 되어 指數의 上下幅이 크게 되고 있다.

그래서 今回의 改編에는 出荷 期間外의 月の 價格을 前의 出荷期間에 있어서 各月の 價格의 平均値를 맞추어 모든 品目으로부터 指數를 計算하도록 하였다.

(計算例)

區 分	加 重 值	指 數	
		改 編 後	改 編 前
洋 服	319	94.1	85.6
(A) 男子洋服	110	96.3	91.3
(a) 紳士服(夏服)	22	89.7	89.7
(b) 紳士服(冬服)	34	98.5	—
(c) 男子上衣	12	99.2	—
(d) 男子바지(冬服)	10	98.4	—
(e) 男子바지(夏服)	10	90.6	90.6
(f) 블루진	5	100.0	100.0
(g) 블루진 코드	9	98.9	—
(h) 男子 學生服	8	100.2	—
(B) 婦人洋服	170	92.4	79.9
(C) 어린이 洋服	39	95.3	94.5

〈1〉(A) 男子洋服指數의 計算方法

○ 改編後

$$\begin{array}{cccccc}
 \text{(a)} & \text{(b)} & \text{(c)} & \text{(d)} & \text{(e)} & \text{(f)} \\
 89.7 \times 22 + 98.5 \times 34 + 99.2 \times 12 + 98.4 \times 10 + 90.6 \times 10 + (100.0 \times 5) \\
 \hline
 22 & + & 34 & + & 12 & + & 10 & + & 10 & + \\
 \text{(g)} & \text{(h)} \\
 + 98.9 \times 9 + 100.2 \times 8 \\
 \hline
 5 & + & 9 & + & 8 & = & 96.3
 \end{array}$$

○ 改編前

$$\frac{\begin{array}{ccc} \text{(a)} & \text{(e)} & \text{(f)} \\ 89.7 \times 22 + 90.6 \times 10 + 100.0 \times 5 & & \\ \hline 22 & + & 10 & + & 5 \end{array}}{=} = 91.3$$

〈2〉(B) 婦人洋服 및 (C) 어린이洋服의 指數는 上記 1과 같은 方法으로 計算함.

〈3〉洋服指數의 計算方法

○ 改編後

$$\frac{\begin{array}{ccc} \text{(A)} & \text{(B)} & \text{(C)} \\ 96.3 \times 110 + 92.4 \times 170 + 95.3 \times 39 & & \\ \hline 110 & + & 170 & + & 39 \end{array}}{=} = 94.1$$

○ 改編前

$$\frac{\begin{array}{ccc} \text{(A)} & \text{(B)} & \text{(C)} \\ 91.3 \times 110 + 79.9 \times 170 + 95.3 \times 39 & & \\ \hline 110 & + & 170 & + & 39 \end{array}}{=} = 85.6$$

(5) 新·舊 消費者物價指數의 比較

1985年 1月에서 1986年 6月까지의 全國의 總合指數에 對하여 新指數와 舊指數(1980年 基準指數를 1985年 = 100으로 換算한 指數)를 比較할때는 圖表 1과 같다.

全體로서 指數의 上昇, 下落의 傾向은 一致하고 있다. 또한 指數의 水準은 新指數는 舊指數에 비해 2月~4月과 8月은 높은

傾向을 보이고 其他의 月은 낮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특히 8 月과 10 月을 比較時 큰 差異를 보이지만 이것은 季節的인 品目 (新鮮食品을 除外) 의 指數計算上 取扱品目の 變更에 의한 것으로서 季節的인 品目を 많이 包含하는 被服 및 신발이 新指數의 上昇 또는 下落을 縮小케 하는 要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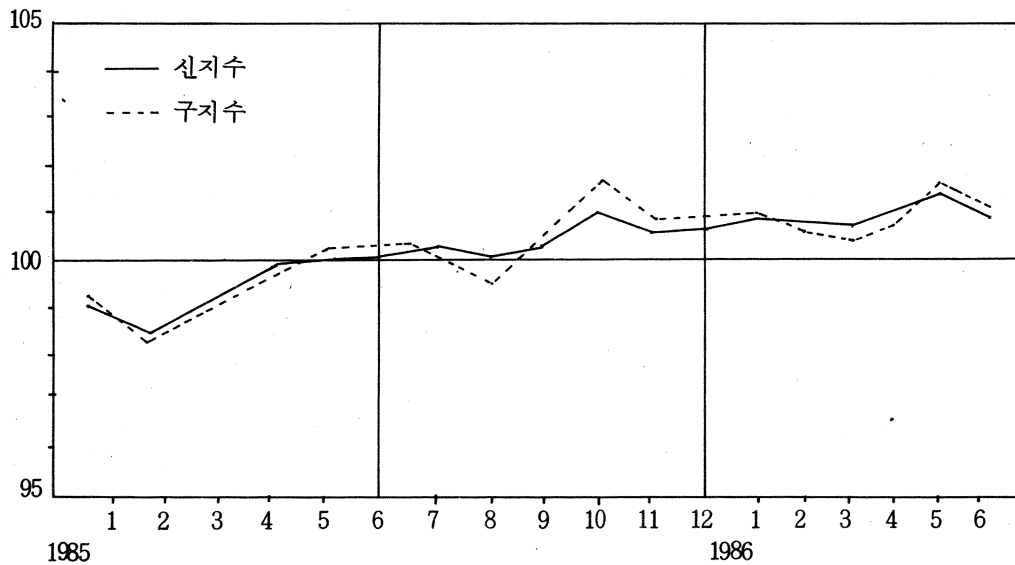
그러나 前年同月比에는 新·舊指數 모두 같은 上昇率로 되어있다.

	全 國					
	新 指 數			舊 指 數 (85年 = 100 換算)		
	指 數	前月比(%)	前年同月比	指 數	前月比(%)	前年同月比
1985年1月	99.3	0.5	2.9	99.5	0.5	2.9
2	98.9	-0.4	1.5	98.8	-0.7	1.5
3	99.3	0.4	1.8	99.2	0.4	1.8
4	99.9	0.6	2.0	99.7	0.4	2.0
5	100.1	0.2	1.8	100.2	0.5	1.8
6	100.1	0	2.5	100.2	0	2.5
7	100.3	-0.2	2.4	100.3	0.1	2.4
8	100.1	-0.2	2.3	99.4	-0.9	2.3
9	100.2	0.1	1.7	100.3	0.9	1.7
10	100.1	-0.9	2.3	101.6	1.3	2.3
11	100.3	-0.8	1.9	100.7	-0.9	1.9
12	100.4	0.1	1.9	100.8	0.1	1.9

	全 國					
	新 指 數			舊 指 數 (85 年 = 100 換算)		
	指 數	前 月 比 (%)	前 年 同 月 比	指 數	前 月 比 (%)	前 年 同 月 比
1986 年 1 月	100.8	0.4	1.5	100.9	0.1	1.4
2	100.7	- 0.1	1.8	100.5	- 0.3	1.8
3	100.6	- 0.1	1.3	100.3	- 0.2	1.0
4	100.9	0.3	1.0	100.7	0.3	1.0
5	101.2	0.3	1.1	101.4	0.7	1.2
6	100.7	- 0.5	0.6	100.9	- 0.5	0.7

(主) 新指數의 1985 年 1 月의 前月比 및 1985 年 1 ~ 12 月의 前年同月比는 舊指數의 數值를 使用함.

新·舊消費者物價指數의 比較 (全國, 總合)



또한 파아세 Check 는 다음과 같다.

年 次	總合指數 (自家의 歸屬家賃 除外)		P - L
	파 아 세 指數 (P)	라스파이레스指數(L)	L
1970 年 (1965 年 基準)	126.0	130.4	3.4
1975 年 (1970 年 基準)	171.0	172.4	0.8
1980 年 (1975 年 基準)	134.6	137.2	1.9
1985 年 (1980 年 基準)	113.3	114.4	1.0

(6) 新指數에 있어서 季節調整한 指數

1985 年 基準 指數에는 新鮮食品을 除外한 季節商品에 對해서는 前期와 같이 價格調査月 以外の 月에 對한 價格은 價格調査月 價格의 月平均價格으로 對替하고, 一年을 通해서 價格이 언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985 年 基準 指數의 季節 變動 樣相은 (5)에서 본바와 같이 舊基準指數의 그것과는 어느 정도 다른 것이 된다. 이때문에 季節調整을 한 指數의 算出에 있어서도 1984 年 以前의 舊基準의 指數値와 1985 年 以後의 新基準의 指數値를 單純히 링크해서 接續하여도 接合性이 되지 않기 때문에, 1984 年 以前의 指數値에 對해서는 1985 年 基準과 같이 保合處理 實施하여 1985 年 = 100 에 換算해서 센서스局法을 適用하였다.

2. 消費者物價指數의 沿革

消費者物價指數의 計算은 1946年 8月에 始作되었다. 당시의 指數는 戰後 混亂期의 物價上昇을 迅速히 測定하기 爲하여 1946年 8月에서 1947年 3月の 8個月間의 期間을 變則的으로 基準時로 하였으며, 다시 日常生活用品에 대해서도 統制價格과 暗價格의 二重의 價格體系가 竝存하는 狀態였기 때문에 消費者價格調査(CPS)에서 얻어지는 實效價格과 加重值를 使用하여 瓏셔의 算式에 따라 作成되었다.

그후 經濟復興으로 消費者價格調査의 資料가 整理됨에 1949年 8월에 第1回 改編을 實施하였으며 基準時도 1948年 1月~12月の 1年間으로 算式도 라스파이레스式으로 改編하였고, 또한 1946年 8月까지 遡及해서 計算하였다. 그리고 1950年 頃에 經濟가 일단 安定됨에 따라 1950年 7月부터 새로이 小賣物價統計調査가 始作되어 1952年 9月에는 基準時가 1951年の 1年間으로 改編됨과 同時에 從前의 實效價格을 小賣物價統計調査에서 얻어지는 小賣價格으로 變更하였고 指數의 作成方法도 本格的인 形態로 改め졌다. 그후에는 消費構造의 變化를 고려해서 1955年 以後 5年마다 基準時를 改編하여 왔다.

指數의 作成系列은 當初 全都市 平均 및 東京都區部の 2系列 뿐이었지만 1951年 基準부터는 이 2系列外에 小賣物價統計調査 및 家計調査를 實施하고 있는 다른 27個 標本 都市를 合하여 29個 系列이 作成되도록 되었다. 그後 1962年 7월에 小賣物價統計調査 및 家計調査가 全國으로 擴大됨에 따라 1965年 基準 改編에 있어서

는 指數作成의 範圍를 全國平均, 都市階級別, 地方別 및 縣廳所在都市別의 合計 68 個 系列로 擴大하였다.

1970 年 基準에서는 「自家의 歸屬家賃을 包含한 總合指數」를 作成하였고, 또한 1975 年 基準에의 改編에서는 1972 年으로 復歸한 沖繩縣의 調査市町村의 指數를 作成하여 全國 平均에 包含, 指數系列도 72 個 系列로 擴大함과 同時에 世帶의 屬性別 特殊指數의 作成을 始作하였다.

1980 年 基準에서의 改編에서는 1981 年 家計調査의 收支項目分類가 改編된 것에 따라 指數項目을 從來의 5 大費目에서 10 大費目으로 改編하고 또한 季節調整한 指數의 作成도 始作하였다.

各 基準時 改編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1. 1949年 8月 改編	2. 1952年 9月 改編	3. 1957年 12月 改編	4. 1961年 11月 改編
(1) 算出期間	1946年 8月 - 1950年 12月 (1952年 7월까지 計算)	1951年 1月 - 1954年 12月 (1957年 10월까지 計算)	1955年 1月 - 1959年 12月 (1961年 9월까지 計算)	1960年 1月 - 1964年 12月 (1966年 9월까지 計算)
(2) 基準時	1948年 1月 - 12月 (1年間)	1951年 1月 - 12月 (1年間)	1955年 1月 - 12月 (1年間)	1960年 1月 - 12月 (1年間)
(3) 價格 및 品目數	消費者 價格 調査 (CPS) 에 의한 實效 價格 (統制 價格 과 暗 價格 과 같이, 2 種類 以上의 價格 이 있는 境遇는 各其 購入 數量을 加重 值로 한 平均 價格. 店舖에서 調査한 價格이 아니고, 消費者가 購入한 價格임으로 品目別 商標 및 品質은 一定하지 않다). 195 個 品目.	小賣物價 統計 調査에 따른 小賣 價格. 254 個 品目.	小賣物價 統計 調査에 따른 小賣 價格. 308 個 品目	小賣物價 統計 調査에 따른 小賣 價格. 332 個 品目
(4) 加重 值	消費者 價格 調査에 따른 1948 年의 消費 支出 金額.	消費 實態 調査에 따른 1951 年 消費 支出 金額	家計 調査에 따른 1955 年의 品目別 消費 支出 金額, 季節 商品 (1980 年 基準의 新鮮 食品에 該當)에 對해서는 1954 年, 1955 年, 1956 年의 3 個年의 月平均 支出 金額에 따른 月別 加重 值	家計 調査에 따른 1960 年의 品目別 消費 支出 金額. 季節 商品에 對해서는 1959 年, 1960 年 2 個年의 月平均 支出 金額에 따른 月別 加重 值
(5) 算 式	基準時 固定 加重 算術 平均 (라스파이레스式)	基準時 固定 加重 算術 平均 (라스파이레스式) 全都市 指數는 市道別 中 分類 指數의 層의 人口에 따른 加重 算術 平均에 의거 算出	基準時 固定 加重 算術 平均 (라스파이레스式) 全都市 指數의 算出은 都市別 品目 指數의 加重 算術 平均 指數 (1 世帶當 支出 金額 과 層의 非農林漁家 世帶數를 加味한 加重 值에 依함)을 求하고 都市別 指數와 같은 方法으로 算出	基準時 固定 加重 算術 平均 (라스파이레스式) 全都市 指數의 算出은 1955 年의 境遇와 같다.
(6) 作成 範圍	全都市 (現在의 「人口 5 萬以上 都市」에 맞는것) 및 東京都 區部.	全都市 및 東京都 區部外에 27 個市의 都市別 指數 作成	1951 年 境遇와 같음.	1951 年 境遇와 같음
(7) 前指數와의 接續 方法	1946 年 8 月 31 日까지 遡及 計算, 前指數 모두 廢止	1948 年 基準 指數의 1951 年 1 月에 있어서 指數 值와 1951 年 基準 指數의 同月의 指數 值와의 比率을 使用해서 1950 年 12 月 以前의 全系列을 換算하고, 1946 年 8 月以後 모든 것은 1951 年 基準으로 換算함. 이 接續은 中分類 以上 指數에 對하여 各其 獨立하여 實施	1951 年 基準 指數의 1955 年 平均 指數 值로, 1954 年 12 月 以前의 前指數를 除外하여 換算함. 이 接續은 中分類 以上 指數에 對해서 各其 獨立하여 實施	1955 年 基準 指數의 1960 年 平均 指數 值를 1959 年 12 月 以前의 前指數를 除外하여 換算함. 이 接續은 中分類 以上의 指數에 對하여 各其 獨立하여 實施

	5. 1966年 11月の 改編	6. 1971年 11月の 改編	7. 1976年 9月の 改編	8. 1981年 8月の 改編
(1) 算出期間	1965年 1月~1969年 12月 (1971年 9月까지 計算)	1970年 1月~1974年 12月 (1977年 3月까지 計算)	1975年 1月~1979年 12月 (1982年 3月까지 計算)	1980年 1月~1984年 12月 (1985年 12月까지 計算)
(2) 基準時	1965年 1月~12月(1年間)	1970年 1月~12月(1年間)	1975年 1月~12月(1年間)	1980年 1月~12月(1年間)
(3) 價格 및 品目數	小賣物價統計調査에 따른 小賣價格 364個 品目	左 同 428個 品目	左 同 485個 品目	左 同 512個 品目
(4) 加重值	家計調査에 따른 1965年の 品目別 消費支出金額, 季節商品에 대해서는 1964年・1965年 2年間の 月平均支出金額에 따른 月別 加重值	家計調査에 따른 1970年 品目別 消費支出金額, 季節商品에 대해서는 1969年・1970年 2個年の 月別 平均支出金額에 따른 月別 加重值를 作成	家計調査에 따른 1975年の 品目別 消費支出金額, 季節商品에 대해서도 1980年の 支出額 및 1979年・1980年の 月別 購入數量에 따라 月別로 加重值 作成	家計調査에 따른 1980年の 品目別 消費支出金額 新鮮食品 對해서는, 1980年の 支出額, 및 1979年, 1980年の 月別 購入數量에 따라 月別 加重值 作成
(5) 算式	基準時固定加重算術平均法(라스파이레스式). 全國, 都市階級, 地方別指數의 算出은 市町村別 品目別價格指數의 加重算術平均指數(1世帶當의 支出金額과 層의 非農林漁家 世帶數를 加味한 加重值에 依함)을 求하고, 從前의 都市別 指數와 同一方法으로 算出	基準時固定加重算術平均法(라스파이레스式) 全國, 都市階級, 地方別指數의 算出은 1965年 基準의 境遇와 같음.	基準時固定加重算術平均法(라스파이레스式) 全國, 都市階級, 地方別指數의 算出은 從來와 같음.	基準時固定加重算術平均法(라스파이레스式) 全國, 都市階級, 地方別指數의 算出은 從來와 같다.
(6) 作成範圍	全國平均, 7個都市階級, 13個地方, 46 縣廳所在都市 및 北九州市의 68系列・舊指數 29季列 가운데 縣廳 所在地가 아닌 7個市에 對해서는 指數作成을 하지 않음.	全國平均, 7個都市階級別, 13個地方, 46 個縣廳所在地 및 北九州市의 68系列	全國平均, 8個都市階級, 14個地方, 47 縣廳所在地都市, 川崎市 및 北九州市의 72系列	全國平均, 8個都市階級, 14個地方, 47 個都道府縣廳所在地都市, 川崎市 및 北九州市의 72系列
(7) 前指數와의 接續方法	從來의 「全都市」指數는 새로 作成한 「人口 5萬以上 都市」에 接續케 하여, 다른 것은 각기 對應系列에서 接續케 함. 接續方法은 다음과 같다. 從來부터 繼續해서 作成하고 있는 22系列에 對해서는 1960年 基準指數의 1965年 平均指數值로 1964年 12月 以前의 前指數를	各 季列마다 1965年 基準의 1970年 平均指數值로, 1969年 12月 以前의 前指數를 除外하고 換算하였다.	各 系列마다 1970年 基準의 1975年 平均指數值로 74年 12月 以前의 前指數를 除外하고 換算함. 더우기 全國 指數는 1963年 以後에 對해서 作成케 되어 있어 그 以前도 包含한 長期系列을 使用할 境遇는 人口 5萬以上の 都市指數를 全國 指數에 接續하기로 하였다.	1979年 以前의 5大費目分類를 10大費目分類에 다시 交替한 다음, 1975年の 1980年 平均으로 1979年 以前의 指數를 除外하여 換算. [基本分類指數] 1. 1955年~1969年: 全國 및 東京 都區部の 年平均 및 年度平均

	5. 1966年 11月の 改編	6. 1971年 11月の 改編	7. 1976年の 改編	8. 1981年 8月の 改編
	除外해서 換算하였다. 새로 計算된 46系列에 對해서는 1963年 基準으로 해서 1963年 1월부터 12月까지의 指數를 計算하고 이것을 22系列과 같은 方向으로 링크하여 接續함.		接續의 方法은 1970年 = 100의 全國 人口 5萬以上の 都市指數의 1963年 平均의 水準差(比)를 調整計數로 하여 1962年 積의 人口 5萬以上の 都市指數를 修正하여 接續	2. 1970年~1979年 : 72系列에 對하여 月別 및 年平均 및 年度平均 [特殊分類指數] 1. 1955年~1969年 : 全國 및 東京都區部の 年平均 (年度平均은 40年度 以後) 2. 1970年~1979年 : 全國 및 東京都區部の 月別 年平均 및 年度平均
(8) 其他	1962년에 家計調査와 小賣物價調査가 全國에 擴大케 함에 따라 指數의 作成範圍도 擴大	自家의 歸屬家賃을 包含한 總合指數를 作成	特別 項目으로 教育關係費를 新設.	[特殊指數 : 勞働者 世帶 年間 收入 5分位 階級別 및 標準 世帶別] 1. 1975年 : 全國의 月別 및 年平均 * 季節調整後 指數作成

3. 1985年 基準 消費者物價指數의 概要

가. 指數의 性格

消費者物價指數는 全國의 消費者世帶(農林漁家 世帶 및 單身者 世帶를 除外한 全世帶)가 購入하는 各種 商品과 서비스의 價格을 總合한 物價의 變動을 時系列로 測定한 것이다. 즉 消費者 物價指數는 家計의 消費構造를 一定한 것으로 固定하여, 이에 必要로 하는 費用이 物價變動에 의해서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指數 值로 보인 것이다. 따라서 世帶別로 購入하는 商品과 서비스의 種類와 購入數量의 變化에 따르는 世帶의 生活費의 變化를 測定한 것은 아니다.

나. 指數算式

指數의 算式은 基準時固定加重算術平均法(즉 라스파이레스式)이다. 즉 基準時 價格을 P_0 , 比較時價格을 P_t , 加重值를 W_0 로 하면 比較時的 指數 I_t 를 구하는 算式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I_t = \frac{\sum_{i=1}^n \frac{P_{ti}}{P_{0i}} W_{0i}}{\sum_{i=1}^n W_{0i}} \quad (i : \text{品目})$$

다. 指數의 基準時 및 加重值

指數의 基準時는 1985年의 1年間이다. 또한 加重值의 算定期間도 1985年 1年間으로 하고 있다.

라. 指數品目

指數計算에 採用되는 品目は 消費者가 購入하는 多數의 商品 및 서어비스全體의 物價變動을 代表할 수 있도록 家計支出上 重要도가 높은 것, 價格變動의 面에서 代表性이 있는 것, 繼續調査가 가능한 것 등의 觀點에서 540個 品目を 選定하고 있다.

(「資料1 1985年 基準指數用 品目情報一覽」參照)

마. 價格資料

指數에서 採用하고 있는 品目の 價格은 小賣物價統計調査에서 얻어진 市町村別, 品目別의 小賣價格이다. 小賣物價統計調査는 全國 167個市町村을 一定한 方法에 의해 選定하며, 이들의 市町村에 있어서 約 31,000個의 價格調査店舖 및 約 23,500個의 집貫世帶와 併行하여 全國 約 540個의 宿泊料調査旅館을 指定해서 每月 價格調査가 實施되고 있다.

또한 調査日은 每月 12日을 包含한 週의 水曜日, 木曜日 또는 金曜日の 어느것이든 1日이다. 但, 每日 價格變動이 큰 新鮮食品 (新鮮魚介, 新鮮野菜, 新鮮果物を 말함 以下同問) 가운데 42個品에 대해서는 每月上旬 또는 中旬, 下旬의 旬期別로 調査하며, 各 各 5日, 12日 22日을 包含한 週의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中 하루를 調査日로 하여, 調査日을 包含한 前3日間の 中間値를 調査하고 있다. 이와같이 해서 蒐集되는 價格數는 全國에서 每月 230,000個 價格이다.

바. 市町村別 比較時 價格

各 調査 市町村에서 調査된 價格을 使用해서 市町村別 品目別 平均價格을 算出하고 이것을 比較時 價格으로 해서 指數計算에 使用한다.

平均價格의 算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基本的인 算出方法

市町村別, 品目別價格은 原則的으로 調査된 價格의 單純平均에 의해 算出한다. 또한 旬期別 調査品目에 대해서는 上旬, 中旬, 下旬別로 各其 平均價格을 求해서 이 旬別價格을 單純平均해서 月平均價格을 算定한다.

(2) 特殊算出方法

比較時 價格은 原則的으로 上期(1)의 單純平均에 의하지만 特殊한 方法에 의해 比較時價格을 求하는 品目이 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가) 加重平均에 依하는 것

私立學校의 境遇 大學에 對해서는 都道府縣別로, 高等學校 및 中學校에 對해서는 市町村別로, 各 學校別의 在學生數를 加重值로 하여, 各 學校의 平均授業料(入學金을 包含)를 加重平均에서 平均價格을 求하고 있다.

(나) 一定한 모델의 料金에 依하는 것

電氣料, 都市가스, 通話料등은 市町村 혹은 地域에 의해서 料金制度가 다르고 있다. 이때문에 指數計算에 쓰이는 價格은 一定한 모델에 의하는 料金を 利用한다. 이 모델에는 家計調査

의 結果等에서 求한 使用量의 Mode (최빈치), 中位數, 혹은 平均使用量 等を 쓰고 있다.

(다) 指數化 하는 것

診察料, 國鐵運賃, 私鐵運賃, 乘用車, 航空運賃 等に 對해서는 每月의 價格을 그대로 指數에 算入하는 것이 아니고, 價格을 加工해서 1985年을 100으로 한 指數의 形態로 해서 이것을 比較時 價格으로 하여 算入하고 있다.

(라) 집貫 및 房貫

民營집貫에 對해서는 住宅의 面積 및 構造에 따라, 木造小住宅, 木造中住宅 및 非木造住宅으로 區分하고 이들 區分마다 總집貫와 總延面積을 計算하여, 이로부터 3.3 m^2 當 價格을 算出하고 있다. 公營집貫는 總집貫와 總延面積에서 3.3 m^2 當 價格을, 房貫는 總房貫와 總疊數에서 1疊當 價格을 算出하고 있다.

(3) 價格의 代入

모든 品目이 調査對象 市町村에 있어서 價格調査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一部 品目에 對해서는 調査가 되고 있지 않은 市町村이 있다. 이러한 市町村에 對해서는 다음 方法으로 代替價格을 代入해서 指數計算을 했다.

(가) 都道府縣廳所在地 都市調査品目은 該當 都道府縣廳所在地의 價格을 該當 都道府縣內의 市町村에 代入한다.

(나) 其他品目에 對해서는 價格을 代入하는 市町村에 地理적으로 가까운 市의 價格을 代入한다. 더우기 價格을 代入하고 있는 市町村에 對해서는 「資料2, 價格調査 市町村一覽」을 參考한다.

(4) 商標(品質規格)變更의 境遇處理

調査商標를 變更하는 境遇 指數計算에 쓰이는 價格의 接續은 主로 다음 方法으로 實施하고 있다.

- 新·舊 商標間에 品質 및 容量등이 差異가 없는 境遇는 新·舊商標 價格을 그대로 接續한다.
- 新·舊 商標의 品質은 같지마는 容量이 差異가 있고, 容量과 價格이 比例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는 境遇, 容量에 따라 價格을 調整해서 接續한다.
- 新·舊 商標間에 明白하게 品質差異가 있다고 보일 境遇는 新·舊商品의 價格比를 使用하여 接續한다.

사. 基準時 價格

1985年 基準의 指數計算에 使用하는 市町村別의 基準時價格은 1985年 1月~12月 價格의 單純平均이다. 但, 新鮮食品에 對해서는 加重値에 의한 加重平均에 依해서 算出하고 있다.

아. 加重値

加重値의 作成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加重値의 資料

加重値는 家計調査에 의해서 얻어진 市町村別의 1985年 平均全世帶 1個月, 1世帶當 品目別 消費支出金額을 使用해서 作成한다. 但, 新鮮食品의 品目別 加重値는 1985年의 品目別 消費支出金額外에 1984年 및 1985年의 月別 購入數量을 使用하여 作成하고 있다.

家計調査는 農林漁家 世帯 및 單身者世帯를 除外한 一般消費者世帯를 調査對象으로 하고, 全國에서 選定한 168個의 市町村에 있어서 每月 約8,000個 世帯(家口)를 調査하고 있다.

家計調査의 概要에 대해서는 「1985年 家計調査 年報」를 參照하기 바람.

(2) 加重値에 採擇한 家計品目の 範圍

消費者物價指數는 一般消費者 世帯의 消費生活에 미치는 物價의 變動을 側定하는 것이므로, 加重値에 採用하는 家計調査品目の 範圍는 消費支出에 限定하고 있다. 따라서 税金과 社會保險料 等の 非消費支出, 貯金, 保險料, 有價證券購入 等の 貯蓄 및 財産購入等 實支出以外의 支出은 加重値에 包含되어 있지 않다.

또한 消費支出 가운데 送金, 贈與金, 信仰費(御布施, 教會獻金, 시주 等) 및 負擔費(町內會費, 同窓會費, 勞動組合費 等)가 移轉支出이라는 것과 서어비스의 內容이 一定하지 않다는 점, 혹은 價格의 動向이 消費者物價指數 全體의 움직임으로 近接된다는 것 等の 理由로 加重値의 算定에서 除外하고 있다. 더우기 自家의 住宅費用에 대해서는 歸屬家賃方式에 따라 指數에 算入하고 있다. 歸屬家賃加重値의 作成方法에 대해서는 다음(6)을 參照하기 바람.

(3) 指數品目과 家計調査의 集計項目과의 對應

指數品目과 家計調査의 集計項目(品目)이 1對1로 對應하는 境遇는, 原則적으로 그대로 對應케 한다. 1對1對應하지 않은 境遇는 該當品目の 支出金額을 그것과 가장 類似한 品目に 賦課

하든가, 또는 同一種類의 그룹의 品目에 按配해서 加重値에 부치도록 한다. 또한 家計調査의 各 種類마다에 있는 其他의 項目에 대해서는 그중에 包含되는 品目에 대해서 特別集計를 實施, 加重値를 算定하도록 하는 이외에 類内の 品目에 配分한다.

表 1 에 따라 加重値對應에 부치는 것을 肉類中の 新鮮肉을 例로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指數品目에 對應하지 않은 家計品目 다진고기의 支出金額을 家計品目の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1/2 씩 配分한다. ② 다음에 分割統合의 方法에 따라 指數品目에의 分割, 割當을 實施한다. ③ 最後에 指數品目에 對應하지 않은 部分, 즉 고래고기 및 其他의 新鮮肉의 支出金額의 4/10 을 指數項目인 「新鮮肉」 類内の 各 指數品目에 配列한다. 또한 「用途」 및 「交際費」에 대해서는 1985年 用途調査의 結果等を 使用하여 各其 項目에 配分한다. 配분에 對해서는 「資料 5 家計集計項目의 指數品目에 分割統合」을 參考하기 바람.

加重值의 計算例

家 計		分 割 率	家 計 項目에의 配 分	(1) 指數項目 에의配分	(2) 類內配分	指 數	
項 目	支 出 金 額					加重值 (1)+(2)	項 目
肉 類							肉 類
新 鮮 肉	(7225)					(7225)	新 鮮 肉
쇠 고 기	2915	$\left\{ \begin{array}{l} \frac{4}{10} \\ \frac{5}{10} \\ \frac{1}{10} \end{array} \right.$	99	$3014 \times \frac{4}{10}$ $= 1,206$	$1206 \times \text{配分}$ $\text{率} = 16$	1202	쇠 고 기 (로 스)
				$3014 \times \frac{5}{10}$ $= 1,507$	$1507 \times \text{〃}$ $= 20$	1527	쇠 고 기 (肩 肉)
				$3014 \times \frac{1}{10}$ $= 301$	$301 \times \text{〃}$ $= 4$	305	쇠 고 기 (輸 入 品)
돼 지 고 기	2751	$\left\{ \begin{array}{l} \frac{1}{2} \\ \frac{1}{2} \end{array} \right.$	99	$2850 \times \frac{1}{2}$ $= 1,425$	$1425 \times \text{〃}$ $= 19$	1444	돼 지 고 기 (로 스)
				$2850 \times \frac{1}{2}$ $= 1,425$	$1425 \times \text{〃}$ $= 19$	1444	돼 지 고 기 (肩 肉)
닭 고 기	1166			1166	$1166 \times \text{〃}$ $= 16$	1182	닭 고 기
고 래 고 기	28	(新 鮮 肉, 類內配分)		(28)			
다 진 고 기	198	($\frac{1}{2}$ 쇠 고 기, 돼 지 고 기)					
其 他 新 鮮 肉	167	$\left\{ \begin{array}{l} \frac{6}{10} \\ \frac{4}{10} \end{array} \right.$ (新 鮮 肉 類內配分)		100 (67)	$100 \times \text{配分率}$ $= 1$	101	간

(주) 配分率 = (28 + 67) ÷ 73100
 (고래 고 기) [타의 新 鮮 肉의 $\frac{4}{10}$] [新 鮮 肉 - (28 + 67)]

(4) 層의 크기에 따르는 調整

上記의 方法으로 作成한 加重値는 各 市町村의 1個月 1世帶 當 支出金額이며, 當該 市町村의 指數計算에는 그대로 쓸수 있지만 市町村을 包含한 全國, 都市階級, 地方別 등의 指數를 求하기 위한 市町村 加重値로서 使用하지 못한다. 그곳에서 各 市町村이 抽出된 層의 크기(2人 以上 非農林漁家 世帶數)에 比例한 計數를 求하여 이를 먼저 作成한 市町村別 加重値에 利用하여 最終的인 加重値를 作成한다. 따라서 이들 加重値는 全國 全世帶의 消費支出金額에 대한 各 市町村, 各 品目の 支出金額의 比率에 適合하도록 되어 있으며 品目別加重値와 市町村別 加重値를 兼할 수가 있게 된다.

더우기 市町村의 加重値의 作成에 있어서는 都道府廳所在地 都市 및 大都市에 對해서는 當該市의 家計調査結果에서 加重値를 作成하였지만, 其他 市町村에 對해서는 家計調査의 調査世帶가 적기 때문에 地方, 都市階級別 平均加重値를 作成하여 이를 各該 市町村의 加重値로서 使用한다.

(5) 新鮮食品의 月別加重値

新鮮魚介, 新鮮野菜 및 新鮮果物の 各類를 總稱해서 新鮮食品이라 부르지만, 이들 類의 加重値는 前述한 方法에 따라 作成한 加重値를 年間을 通하여 固定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類에 包含되는 品目の 加重値는 每月의 相對比率을 變更하는 月別加重値를 쓰고 있다. 月別의 加重値는 1985年 品目別 支出金額에 1984年, 1985年의 平均을 使用한 年平均購入數量과

月別購入數量의 比率을 適用(乘)하여 作成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求한 品目別 加重值의 合計와 먼저 求한 類의 加重值와는 一致하지 않음으로 類別加重值에 맞도록 品目別 加重值를 比例的으로 調整하고 있다. 月別加重值에 대해서는 「資料4. 新鮮食品의 月別加重值(1萬分比)」를 參考하기 바람.

(6) 自家의 歸屬家賃加重值

住宅의 購入은 財産購入이므로 消費者物價指數의 對象에 包含되어져 있지 않지만, 自家일지도 이것으로부터 받은 서어비스를 가령 借家에서 받은 것이라고 評價한 家賃相當額을 歸屬家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加重值에 適用한 것이 自家의 歸屬家賃加重值이다.

歸屬家賃은 1984年 全國 消費實態調查의 自家世帶 歸屬家賃을 使用하며, 이에 後의 民營家賃의 上昇率, 家計調查의 消費支出額과의 水準差 等に 따른 調整을 實施, 다시 歸屬家賃과 重複計算이 되는 家賃地賃 「設備修繕, 維持」를 借家の 베이스로 評價하여 修正算出하고 全國 消費實態調查의 借家率을 乘하여 算出한다.

자. 指數의 計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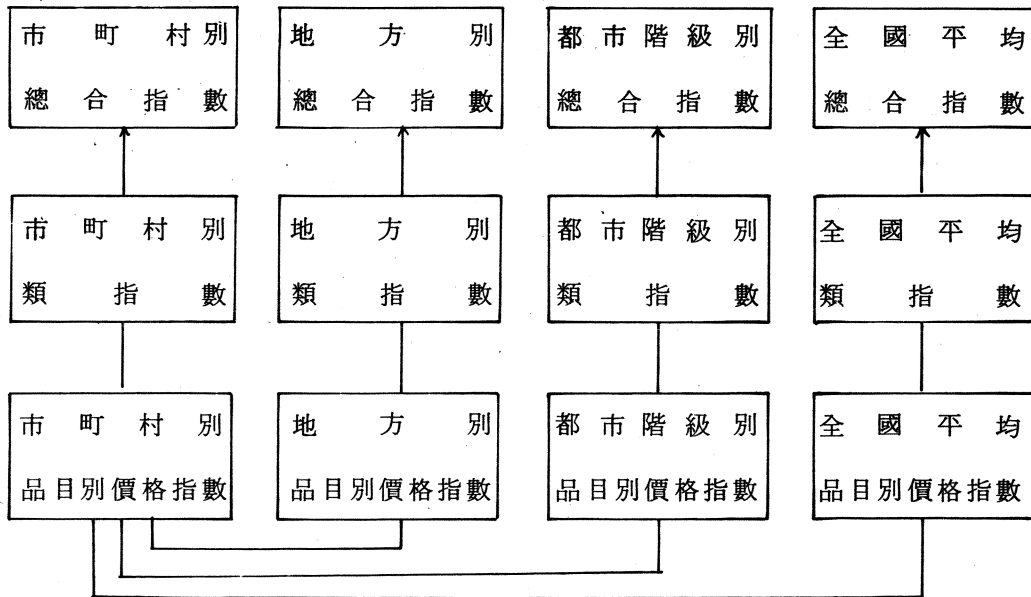
(1) 指數의 計算方法

指數의 計算은 먼저 品目別價格指數를 品目別 加重值에 따라 加重平均 해서 最小類의 指數를 算出하고, 그다음 이들의 最小類指數를 그에 對應하는 類의 加重值에 따라 加重平均 해서 上

位類의 指數를 算出한다. 이와 같이 하여 中分類指數 10大 費目指數, 總合指數의 順으로 쌓아올린다.

各 市町村의 指數에 대해서는 上記의 方法에 따라 該當 市町村의 價格指數를 當該 市町村의 加重値에 의해 加重平均하여 算出한다. 全國平均指數는 먼저 各 市町村의 品目別 價格指數를 市町村別 加重値에 따라 加重平均하여 品目別 全國平均價格指數를 求하며, 이를 全國平均의 品目別 加重値에 의해 加重平均하여 類指數를 計算, 위에서 말한 方法에 따라 다음 上位分類順에 따라 순차적으로 計算하여 總合指數를 算出한다. 더우기 都市階級別指數, 地方別指數등도 같은 方法에 따라 算出한다.

消費者物價指數의 計算



더우기 品目에서 類에의 쌓아올라감에 對해서는 「資料 6. 品目에서 類에의 合算表 (基本分類)」를 參照하기 바람.

(2) 年平均, 年度平均指數 및 四半期 平均指數의 計算方法

新鮮食品 以外の 品目別 價格指數 및 類指數의 平均은 1月~12月の 各月の 指數值의 單純平均에 의해서 計算하고, 新鮮食品의 品目別 價格指數는 月別 加重值에 의한 加重平均에 의해서 算出하고 있다.

年度平均 및 半期平均, 4半期平均指數에 대해서는 年平均指數에 準하여 算出하고 있다.

차. 季節調整하는 指數의 作成方法

物價變動의 基調를 보기위해서는 季節調整한 指數를 作成하고 있다. 이 季節 調整한 指數의 計算方法은 美國 센서스局法 (X-11)에 따르고 있고, 當該 1年間은 推定季節指數로 當該年の 各月の 原指數를 除해서 作成한다.

또한 12月の 結果가 나왔으면, 當該 1年間の 資料 (Data)를 包含하여 推定季節指數를 作成하여 이에 따라 當初의 季節調整한 指數를 改編해서 確正季節調整指數로 한다.

카. 指數의 作成系列

(1) 基本分類指數

(가) 類別指數는 總合指數外에 10大費目 및 이를 細分化한 가운데 中分類指數를 作成하고 있다. 또한 總合指數外에 「自家의 歸屬家賃을 除外한 總合」 및 「新鮮食品을 除外한 總合」 및

「自家의 歸屬家賃 및 新鮮食品을 除한 總合」指數를 作成하고 있다. 各 品目이 어느 類에 屬하는가에 對해서는 「資料6. 品目에서 類에의 合算表(基本分類)」에서 表示한 바와 같다. 더우기 總合 指數에 對해서는 1. 나. (3)의 「自家이 住宅費用 算入에 따르는 總合指數의 變更」을 參考하기 바란다.

(나) 地域別指數는 全國平均, 都市階級, 地方(包含 4大都市圈), 都道府縣廳所在都市, 北九州市 및 川崎市의 72系列을 作成하고 있다. 各 市町村이 어느 都市階級 혹은 地方에 屬하는가에 對해서는 「資料2. 價格調査 市町村一覽」에 보이는 것과 같다.

(다) 都市階級에 對해서는 原則적으로 다음 基準에 依하고 있다.

- 大都市 : 人口 100萬 以上の 市 (廣都市 包含)
- 6大都市 : 東京都區部, 横浜市, 名古屋市, 京都市, 大阪市, 神戸市.
- 中都市 : 人口 15萬 以上 100萬 未滿의 市
- 小都市 A : 人口 5萬 以上 15萬 未滿의 市
- 小都市 B : 人口 5萬 未滿의 市
- 町 村 : 町 및 村

(2) 特殊分類指數

品目を 주로 財貨인가 서서비스인가에 따라 分類하고, 다시 이를 細分類한 特殊分類指數를 作成하고 있다. 作成系列은 全國平均 및 東京都區部の 2系列이다. 特殊分類項目에 對해서는 「資料7 品目에서 類에의 合算表(特殊分類)」를 參照하기 바람.

(3) 特殊指數

위에서 말한 基本分類指數 및 特殊分類指數는 모두가 全國의 消費者世帶의 平均的인 支出構造를 根據로 作成되어 있지만, 物價變動의 影響은 世帶의 收入과 世帶主의 年齡등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世帶의 屬性別 物價變動을 分析하기 위하여 參考로서 特殊系列指數를 作成하고 있다. 作成系列은 다음과 같음.

(가) 勤勞者世帶年間收入 5分位 階級別 및 標準世帶 : 月別指數 및 年平均指數

(나) 世帶主의 年齡階級別 : 年平均指數

(다) 世帶主의 職業別 : 年平均指數

(라) 住居의 所有關係別 : 年平均指數

또한 다음 特殊指數도 作成하고 있다.

(마) 基礎的, 選擇的 支出項目別 : 月別指數 및 年平均指數

(바) 品目的 購入頻度階級別 : 月別指數 및 年平均指數

(사) 連鎖基準方式에 따른 消費者物價指數 : 年平均指數

(4) 季節調整한 指數

季節調整한 指數에 對해서는 總合指數外에 「自家의 歸屬家賃을 除外한 總合指數」, 「新鮮食品을 除外한 總合指數」 및 「自家의 歸屬家賃 및 新鮮食品을 除外한 總合指數」를 作成한다.

타. 指數의 公表

消費者物價指數는 原則的으로 每月 26日을 包含한 週의 金曜日

에 公表된다. 公表內容은 全國의 前月分指數와 東京都區部の 當月
分中旬 速報値이다

더우기 12月分 및 3月分 公表時에는 年平均指數 및 年度平均
指數가 各各 公表된다.

公表한 指數에 對해서는 다음 結果報告書에 따라 刊行하고 있다.

- (1) 消費者物價指數速報 : 每月 公表日에 發刊, 全國 및 東京都區部
의 中分類指數를 收錄
- (2) 消費者物價指數月報 : 每月中旬에 發刊, 當該月の 全系列指數 및
主要系列의 時系列指數를 收錄
- (3) 消費者物價指數年報 : 當該年の 1月~12月分 指數外에 時系列指
數를 收錄

더우기 月報 및 年報는 政府刊行物로서 市販되고 있다.

Ⅱ . 1987年 全國物價統計調查

全國物價統計 調查(1987年)

1. 調查概要

가. 調查目的

1987年 全國物價 統計調查는 國民의 消費生活에 있어서 重要な 支出의 對象이 되는 小賣價格, 서어비스料金, 都賣價格 等を 調查하며 小賣調查에 對해서는 地域別, 店舖形態別, 商店價의 類型別 等 그리고 都賣에 對해서는 業態別, 去來段階別 等の 價格을 明白히 밝힘에 따라 價格政策 및 其他 經濟政策(施策)의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나. 調查時期

調查는 小賣價格 等を 調查하는 小賣調查와 都賣價格 等を 調查하는 都賣調查로 나누고 各各 다음과 같은 日字에 實施되었다.

(1) 小賣調查

小賣店舖, 서어비스事業所에서 1987年 11月 19日에서의 販賣價格, 서어비스料金 等を 調查한다.

但, 調查品目 가운데 每日의 價格變動이 큰 新鮮 食料品(新鮮魚介, 野菜, 果實類)에 對해서는 1987年 11月 18, 19, 20日의 3日間の 價格을 調查한다.

(2) 都賣調查

都賣店舖에 있어서는 1987年 11月 9日에 都賣價格, 販賣數量 等を 調查한다.

다. 調査의 對象 및 範圍

(1) 小賣調査

(가) 調査는 全國의 693 個 市町村에서 實施한다.

- 1985 年 10 月 1 日現在 人口 10 萬以上の 全市 (東京都區部를 包含) (203 個市)
- 人口 10 萬未滿의 市에 對해서는 一定한 方法에 依해서 226 個市를 選定한다.
- 町村에 있어서는 一定한 方法에 따라 264 個町村을 選定한다.

(나) 小賣店舖는 全國에 約 20 萬個의 店舖를 選定한다.

- 一般商品 및 서어비스에 對해서는 小賣店舖 가운데서 調査品目마다 店舖를 選定한다.
- 各種 商品을 取扱하고 있는 小賣業 가운데 從業者가 50 人以上의 店舖에 對해서는 모든 店舖를 調査한다.
- 집賃 (家賃), 木手품샅等의 特別한 商品 및 서어비스에 對해서는 調査對象 市町村 全域에서 調査店舖를 選定한다.

(2) 都賣調査

(가) 調査都市

- 調査는 各 都道府廳所在市, 川崎市 및 北九州市의 49 個市에서 實施한다.

(나) 調査店舖

- 調査店舖는 49 個市에서 約 12,000 個 店舖를 選定한다.

市, 都 名	調 査 方 法
札幌市, 東京都區部, 構濱市, 名古屋市, 京都市, 大阪市, 神戸市, 廣島市, 福岡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從業者 50 人 以上の 店舖는 모두 調査한다. • 從業者 50 人 未滿의 店舖는 必要한 數를 選定해서 調査한다.
上記 以外の 廳廳所在市 川崎市, 北九州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從業者 20 人 以上の 店舖는 모두 調査한다. • 從業者 20 人 未滿 店舖는 必要한 數를 選定해서 調査한다.

라. 調査對象品目 및 品質規格 (商標)

(1) 小賣調査

調査對象品目は 다음 基準에 依해서 選定된다.

(가) 日常 消費生活上 重要な 品目

(나) 地域間, 店舖間等の 價格差를 充分히 代表할 수 있는品目

各 品目は 原則적으로 1 個品目に 對해서 複數 商標를 指定해서 調査한다. 이것은 複數의 商標를 調査함에 따라 消費者物價 地域差 指數를 보다 正確하게 計算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調査하는 品目 및 商標는 다음과 같다.

	調 査 品目數	調 査 商標數	品 目 例
食 料	128	297	맷쌀, 즉석면, 다랑어, 정종 등
住 居	8	18	집세(가임), 옥조, 담장공사비 등
光熱, 水道	4	9	가스, 프로판가스, 등유, 수도료 등
家具, 家事用品	37	102	전기냉장고, 룸에어콘, 휴지 등
被服 및 신발	33	117	신사복, 스카프, 운동화 등
保 健 醫 療	10	33	위장약, 드링크제, 입원료 등
交 通, 通 信	9	26	버스대, 자동차취발유, 통화료 등
教 育	5	19	PTA 회비, 중학교수업료, 학원비 등
教 育 誤 樂	32	92	T.V, 테니스라켓, 영화관람료 등
諸 雜 費	16	49	파마대, 샴푸, 핸드백 등
計	282	762	

(2) 都賣調查

調查하는 品目은 다음 基準에 따라 選定된다.

(가) 小賣價格과의 比較에서 小賣調查로 調查하는 品目.

(나) 流通段階마다 調查possible한 品目.

調查하는 品目 및 商標는 다음과 같다.

	調 査 品目數	調 査 商標數	品 目 例
食 料	19	80	즉석면, 식용유, 초코렛, 치즈 등
住 居	-	-	
光熱, 水道	2	2	등유, 프로판가스
家具, 家事用品	9	25	전기냉장고, 마법병, 휴지 등
被服 및 신발	5	25	와이셔츠, 아동용셔츠, 남자구두 등
保 健 醫 療	3	13	감기약, 비타민, 위장약
交 通, 通 信	2	5	자동차, 휘발유, 자전거
教 育	-	-	
教 育 誤 樂	5	18	T.V, 카메라, 노트 등
諸 雜 費	3	6	샴푸, 치솔, 손목시계
計	48	174	

마. 調查事項

(1) 小賣調查

商品 및 서어비스業을取扱하고 있는 調查店舖에 對해서 다음 事項을 調查한다.

(가) 店舖에 관한 事項

- a) 店舖의 名稱
- b) 店舖의 形態
- c) 賣場面積

- d) 從業者數
- e) 營業時間
- f) 取扱商品の 種類 또는 營業品目

(나) 品目에 關한 事項

- a) 販賣價格 또는 料金
- b) 主로 買入하는 都道府縣名
- c) 其他 商標에 關한 事項

(2) 都賣調査

商品을 販賣하고 있는 都賣調査 店舖에 對해서 다음 事項을 調査한다.

(가) 店舖에 關한 事項

- a) 店舖의 名稱
- b) 本所, 支所別
- c) 店舖의 形態
- d) 從業者數
- e) 決済方法
- f) 同一 都道府縣內的 販賣比率
- g) 取扱商品の 種類

(나) 商品에 關한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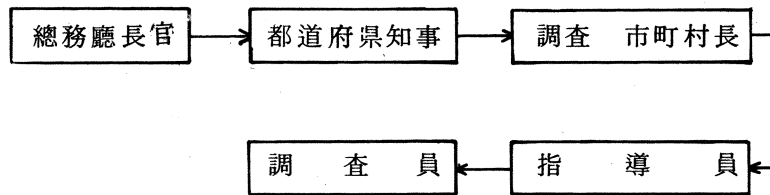
- a) 販賣價格
- b) 販賣數量
- c) 主로 買入 地域
- d) 主된 買入線의 都道府縣名

- e) 販賣價格의 割引 狀況
- f) 其他 商標에 關한 事項

바. 調查方法

(1) 小賣調查

調查는 다음 系統으로 實施한다.



實際 調查活動은 都道府県知事に 依해서 任命된 調査員이 實施한다.

- 調査票의 配布, 記入, 蒐集

〈 配布 〉

調査員이 11月 上旬부터 各 調査 店舖를 訪問해서 調査의 協力을 依頼함과 同時に 調査票를 配布해서 記入을 依頼한다.

〈 記入 〉

調査票는 다음의 3種類이다.

- (가) 小賣店舖(事業所) 調査票: 「店舖의 名稱」, 「店舖의 形態」 店舖에서 購買되는 調査項目을 記入한다.
- (나) 小賣價格 調査票: 商品의 價格을 記入한다. 더우기 商品에 對해서는 主로 購入하는 都道府県名을 記入한다.

(다) 집賃(家賃)民營調査票：賃貸家口の 賃借料와 設備等に 對해서 記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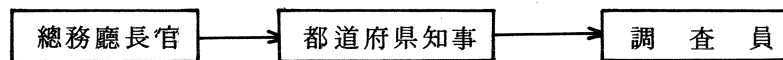
調査票의 記入은 調査店舖의 代表者 또는 管理責任者가 行한다.

〈蒐 集〉

記入을 마친 調査票는 11月 下旬에 調査員이 各 調査店舖를 訪問하여 蒐集한다.

(2) 都賣調査

調査는 다음 系統으로 實施한다.



實際調査活動은 都道府県知事로 부터 任命된 調査員이 調査한다.

○ 調査票의 配布, 記入, 蒐集

〈配 布〉

調査員이 10月 下旬부터 各 調査店舖를 訪問해서 調査協力을 依頼함과 同時に 調査票를 配布해서 記入을 依頼한다.

〈記 入〉

調査票는 다음과 같이 2種類이다.

(가) 都賣店舖(事業所)調査票：「店舖의 名稱」「本所, 支所別」等 店舖에 關係되는 調査項目을 記入한다.

(나)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商品の 價格, 數量等を 記入한다.
調査票의 記入은 調査店舖의 代表者 또는 管理責任者가 한다.

〈 蒐 集 〉

記入을 마친 調査票는 11月 中旬에 調査員이 各 調査
店舖를 訪問하여 蒐集한다.

사. 集計事項

調査店舖에 記入된 調査票는 小賣調査에서는 調査 市町村, 都
道府県을 거치고 都賣調査에서는 都道府県을 거쳐 總務廳 統
計 센터에 모아진다. 이렇게 蒐集된 調査票는 電子計算機를 利
用 集計한다.

이러한 集計는 豫定하고 있는 主要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小賣調査結果

(가) 消費者物價 地域差 指數를 計算한다.

物價는 都市와 農村에 서로 差異가 있다. 이와같은 物價
의 地域間 格差를 보기 위해 「消費者物價地域差 指數」를
算出한다. 消費者物價地域差 指數는 地方, 県, 市等の 地域區
分에 對해서 算出한다.

(나) 商店街와 其他 地域間的 隔差를 본다.

物價는 上記와 같은 地域間 隔差가 있고, 또한 都市內에
서도 商店이 密集한 소위 商店街와 住宅地域間에는 地域間
意味가 있다. 이 調査에는 都市內的 地域的인 性質에 依한
地域區分에 依해서도 物價의 隔差를 明白하게 한다.

(다) 店舖間 隔差를 본다.

物價를 地域的으로 보는 것도 重要하지만 同一 商品에 있어서도 一般小賣店, 슈퍼마켓, 百貨店이라고 하는 店舖形態에 對해서는 價格이 差異가 난다. 따라서 이와 같이 店舖의 形態別 價格統計를 作成한다.

(2) 都賣調查結果

(가) 流通段階別 價格을 본다.

小賣調查結果와 都賣調查結果를 合하여 商品의 流通段階別 價格을 統計的으로 把握하기 위한 結果를 作成한다.

(나) 流通經路를 본다.

生産者로 부터 小賣店에 이르기 까지의 店的流通經路는 極히 複雜 多岐하기 때문에 이들 狀況의 一面을 把握하기 위하여 品目마다 流通經路別 價格과 數量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아. 結果의 利用

調査結果는 國家와 都道府縣等에서의 各種 行政施策과 經濟計劃의 企劃立案, 物價對策 等の 基礎資料로서 利用됨은 물론 그 外에 消費者團體, 流通團體, 生産者團體 等に 依해서도 널리 利用된다. 또한 이 外에 結果表를 再加工하는 것에 따라 價格形成要因의 分析等 研究的인 目的에 利用할 수 있다.

이와같이 全國 物價統計調査는 많은 目的에 利用되는 基本的인 統計調査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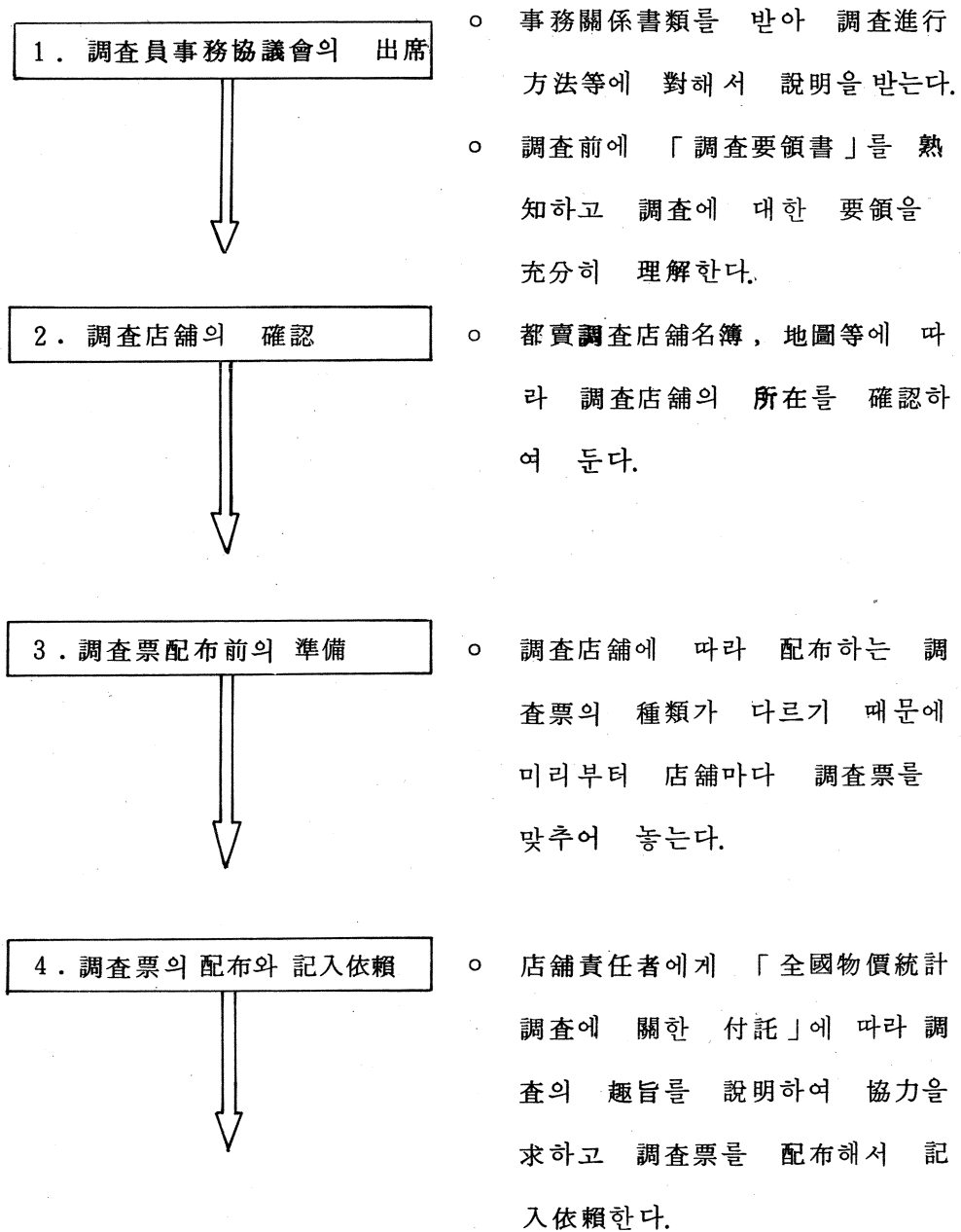
자. 機密의 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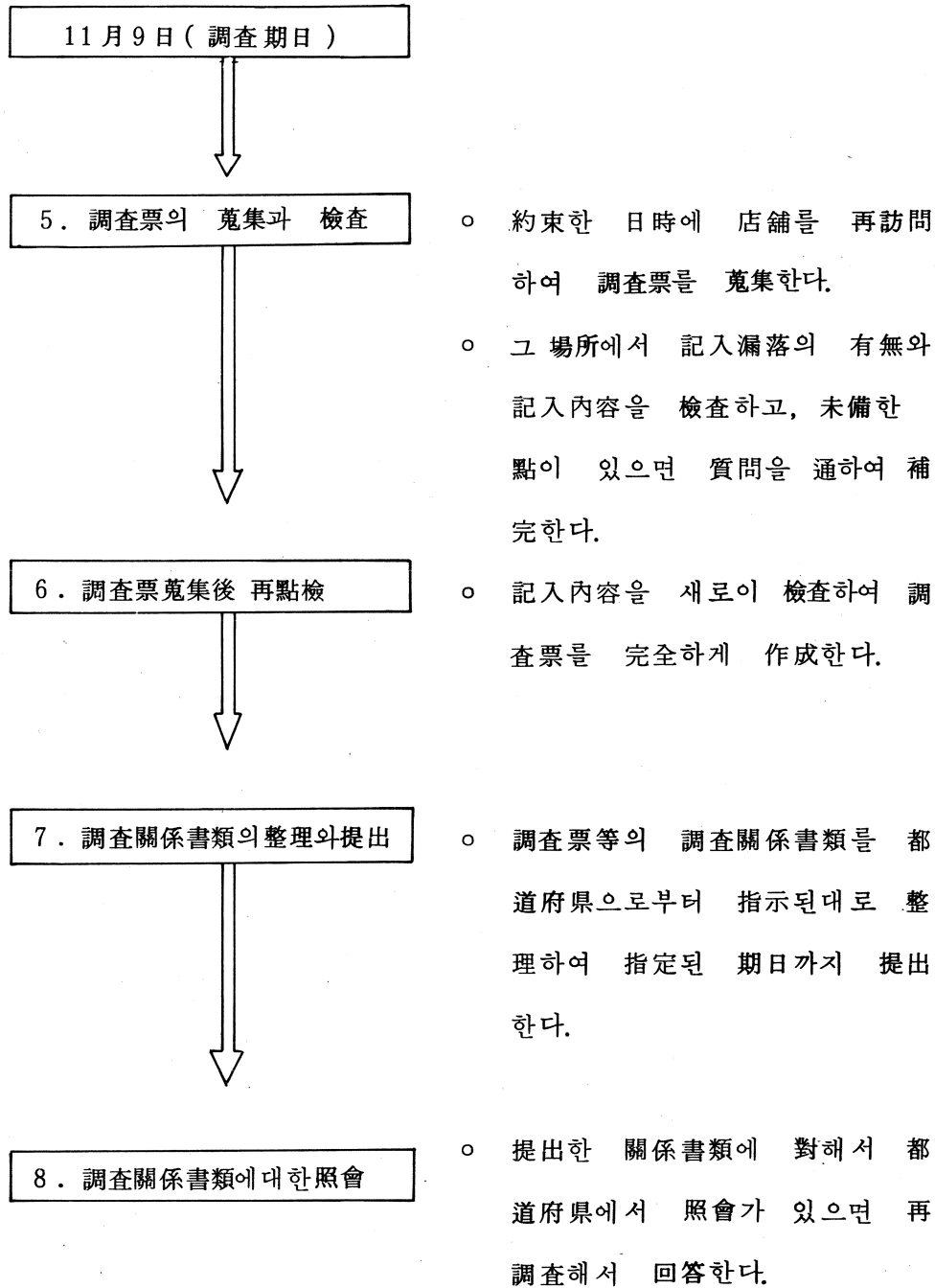
調査된 事項은 統計를 作成하는데만 使用되며 其他의 目的 에
컨데 課稅等의 資料에 使用하는 것은 法律로 禁止되어 있다. 또
調査員이나 調査關係者가 調査를 맡게된 事項은 他에 漏泄하는
것을 法律로 禁止하고 있다.

2. 調査要領

가. 調査員의 事務概要

調査員의 事務概要를 보면 다음 圖表와 같다. 이 圖表에 따라 事務를 進行한다.





(注意)

事故等を 위해 日程대로 調査를 미치지 못하게 되는 境遇와 調査에 있어서 解決되지 못하는 問題가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즉시 다음 連絡線으로 連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連絡線

電話 () 番 (交換)

나. 調査方法

(1) 調査店舖의 確認

(가) 調査의 對象이 되는 店舖는 「都賣調査店舖名簿」 (以下 店舖名簿라함) 에 表示 되어있는 店舖이다. 店舖名簿에는 「店舖一聯番號」, 「抽出區分番號」, 店舖의 「名稱」·「所在地」·「電話番號」 및 店舖에 「配布하는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의 番號」가 記載되어 있다.

또 此外에 1985年 商業統計調査의 「基本調査區番號」 및 「商店番號」가 記載되어 있지만은, 이들은 調査員에게는 直接關係가 없음.

(나) 調査店舖 (이하 「店舖」라 한다) 의 所在地에 對해서도 店舖名簿外에 地圖等에 따라 그 位置가 表示됨에 依해서 店

舖의 所在地를 確認한다. 더우기 店舖의 名稱이 變更되어 있
는지 移轉되어 있어, 店舖名簿의 記載가 實際와 다른 境遇
에는 店舖名簿를 訂正한다.

(2) 調査票 配布前의 準備

(가) 調査票에는 「都賣店舖(事業體) 調査票」와 「都賣價格·數
量等 調査票」의 2個種類가 있고, 「都賣價格·數量等 調査
票」는 品目마다 作成되어 있다.

(나) 店舖에 따라 配布하는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의 種
類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店舖마다 「都賣價格·數量等 調
査票」를 맞추어 놓는다. 더우기 店舖에 配布하는 「都賣價
格·數量等 調査票」의 番號(右上段欄에 表示되어 있는 番
號)는 店舖名簿의 「(7) 配布하는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의
番號」란에 表示되어 있다.

(3) 調査票의 配布와 記入依賴

(가) 店舖에는 都賣府県에서 事前에 「依賴狀」을 送付하여 調
査의 協力을 付託하고, 店舖의 責任者에게 「全國物價統計調
査에 關한 付託」을 配付하여 調査票의 記入을 依賴한다.

더우기 店舖에 訪問할 때는 다음 事項을 留意하는 外에
「質問이 있을 境遇의 應答하는 方法例」 參考로 하여 店舖와
面接하도록 한다.

〈店舖訪問할 때의 留意點〉

- (a) 店舖를 訪問할 때에는 店舖가 比較的 바쁘지 않은 時間을 選擇한다.
 - (b) 調査員證을 提示하고, 그 店舖에서 責任을 갖고 調査票에 記入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도록 한다.
 - (c) 「全國物價統計調査에 대한 付託」에 따라 調査의 趣旨를 잘 說明해서 協力을 얻어 調査票의 記入을 依賴한다.
 - (d) 店舖가 休業等으로 調査票의 配布를 할 수 없는 境遇는, 再訪問을 하여 調査票의 配布를 確實하게 한다.
 - (e) 訪問할 때에는 먼저 인사를 하고 身分과 用件을 大綱말씀한 後에 될 수 있는한 빨리 調査의 說明을 始作한다.
- (나) 配布하는 調査票는 「都賣店舖(事業體) 調査票」와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이다. 더우기 價格調査票를 配布할 때에 該當 店舖에 價格調査票에 記入되어 있는 品目을 取扱하는지의 與否를 確認한다.
- (다) 取扱하고 있다고 確認된 境遇는 그 價格調査票를 配布함과 同時에 店舖調査票 「配布한 調査票番號」란에 配布한 價格調査票의 調査票番號와 同一한 番號에 「0」表하고 또 店舖名簿의 「配布하는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番號」欄에 記入되어 있는 該當 調査票番號에 0 表示한다.
- (라) 調査票를 모으기 위해 再訪問하는 날과 時刻을 約束하고 店舖調査票의 「備考」欄에 記入하며 店舖調査票를 配布한다. 이때 店舖名簿의 「備考」欄에도 記入한다.

(마) 調査票를 配布하고 나면, 記入할 事項을 잘 說明하여 「調査票의 記入方法」을 넘겨주고, 이것에 따라 正確하게 記入할 수 있도록 依賴한다.

〈 調査票 記入上 留意點 〉

店舖에서 調査票에 記入할 때 다음점에 留意할 것을 付託함.

- (a) 記入은 黑色 또는 靑色の 筆記用具(鉛筆, 볼펜等)을 使用한다.
 - (b) 文字는 楷書로, 數字는 아라비아數字로 똑똑하게 記入한다.
 - (c) 誤記의 境遇는 橫線으로 긋든지 지우개로 지워서 바르게 고친다. 더우기 調査票의 具體的인 記入方法 및 注意點에 對해서는 「第4章 調査票 各欄의 記入方法」을 參照한다.
- (바) 마지막으로 「 調査票封套 表紙下段에 約束한 再訪問 날짜와 時刻을 記入하여 둔다.

(4) 調査票의 蒐集과 檢査

- (가) 調査票를 配布할 때에 約束한 日時に 店舖를 訪問하여 店舖調査票와 價格調査票를 다시 蒐集한다.
- (나) 調査票를 蒐集할 때, 그 場所에서 檢査를 하고 漏落事項과 疑問點 등이 있으면, 그 場所에서 質疑應答하여 補完訂正한다.

檢査의 要點은 다음과 같다.

〈 檢査의 要點 〉

- (a) 記入漏落은 없는가
- (b) 不明確한 文字는 없는가
- (c) 記入錯誤는 없는가

주로 上記의 事項에 대해 檢査를 하며, 都道府縣으로부터 指示되는 事項이 있으면 그 事項에 對해서도 檢査한다.

- (다) 蒐集할 수 없는 價格調查票가 있는 境遇는, 店舖調查票의 「가·配布한 調查票番號」欄의 該當調查票番號에 「X」표를 하고, 다시 店舖名簿欄「配布하는 都賣價格·數量等 調查票番號」의 該當 調查票番號에도 「X」표를 한다.
- (라) 店舖 調查票의 下段 「가·回收한 調查票 枚數」欄에 蒐集한 價格調查票의 枚數를 記入한다.
- (마) 끝으로 調查協力에 대해 感謝 말씀을 드림과 同時 封套 函에 넣은 感謝狀을 전함

(5) 調查票 蒐集後 再點檢

調查票를 蒐集하면, 「調查票 內容檢査要點」을 參考해서 記入內容을 再點檢하며 記入內容上 未非한 點이 있으면 問議해서 調查票를 完全하게 作成한다.

(6) 調查關係書類의 整理 및 提出

調查票, 店舖名簿等の 調查關係書類를 次例로 整理하여 指定된 期日까지 提出한다. 이때 未使用된 調查關係書類도 함께 返納한다.

- (가) 店舖마다 店舖調査票를 上段에 놓고 價格調査票를 調査票番號順으로, 그리고 이것을 다시 店舖番號順으로 整理한다.
- (나) 店舖名簿 맨 밑의 「調査票 提出枚數」欄에 店舖調査票 및 價格調査票의 提出枚數를 記入한다.
- (다) (가)에서 整理된 調査票위에 店舖名簿를 添附해서 指定된 期日까지 都道府縣에 提出한다.

다. 調査票 各欄의 記入方法

(1) 都賣店舖(事業體) 調査票

調査票에는 “調査員이 記入하는 欄”과 “店舖가 記入하는 欄”이 있다.

【調査員이 記入하는 欄】

(가) 店舖訪問前에 記入하는 欄

市區町村番號	調査員番號	店舖番號	抽出區分番號

- 「調査員番號」欄은 店舖名簿左上의 「調査員番號」欄에 記載되어 있는 番號를 移記한다.
- 「店舖番號」, 「抽出區分番號」欄은 各기 店舖名簿의 「店舖一聯番號」 및 「抽出區分番號」欄에 表示되어 있는 店舖마다의 番號를 이기한다.

(注) 「市區町村番號」欄은 都道府縣에서 記入함으로 調査員이 記入할 必要는 없다.

(나) 調査票를 配布할 때 記入하는 欄

가·配布한 調査票番號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30
	31 45
	46 55
備考	

- 「가·配布한 調査票番號」欄은 店舖에 配布한 價格調査票의 調査票番號를 「0」表로 한다.
- 「備考」欄은 調査票를 蒐集하기 위하여 訪問하는 日時等 必要事項을 記入한다.

(다) 調査票를 蒐集한 後에 記入하는 欄

가. 回收한 調査票枚數	枚
--------------	---

- 「가. 回收한 調査票枚數」欄은 價格調査票의 枚數를 記入한다.
- 店舖에서 蒐集하지 못한 價格調査票가 있을 境遇는 「가. 配布한 調査票番號」欄에 0表로 한 그 調査票番號에 「X」表로 하고 그 理由를 「備考」欄에 記入한다.

【店舖가 記入하는 欄】

(가) 「1 店舖의 名稱」

1 店舖의 名稱	
----------	--

(a) 略稱이나 普通名稱이 아니고 될수 있는 한 正式名稱을 記入한다.

(b) 法人의 境遇, 會社의 種類를 表示한 “株式會社”, “有限會社”, “合名會社”, “合資會社”, “相互會社” 등은 각기 「株」, 「有」, 「名」, 「資」, 「相」 등과 같이 略해서 記入하여도 支障이 없다. 더우기 會社의 種類를 票示한 部門에는 漢字로 記入할 必要는 없다.

(나) 「2 本所, 支所別」

	1	2	3
2 本所·支所別	單獨店舖	本所·本社·本店	支所·支社·支店·營業所

○ 適合한 區分의 番號에 0 表 한다.

「1 單獨店舖」: 他 場所에 同一經營의 本所·本社·本店과 支所·支社·支店·營業所를 갖지 않은 店舖를 말한다.

「2 本所·本社·本店」: 他 場所에 同一經營의 支所·支社·支店·營業所 등의 事業所가 있어서 그들 모두를 總括하고 있는 所謂 本所·本社·本店 등의 事業所를 말함.

「3 支所·支社·支店·營業所等」: 他 場所에 있는 本所·本社·本店의 總括을 받고 있는 事業所를 말함. 또 上位의 事業體에 依해서 總

括하고 있는 中間的인 事業體도 이에 包
 含한다.

(다) 「3 店舖의 形態」

	1	2	3	4
3 店舖의 形態	生産者의 支店· 營業所 等	生産者設立의 販賣會社 等	一 般 都賣店	其他의 都賣店 農協·生協·수퍼체인本部

○ 適合한 區分의 番號에 0 表示 한다.

「1 生産者의 支店·營業所等」: 都賣店舖 또는 小賣店舖에 對해
 서 自企業製品의 販賣 혹은
 配達等의 營業活動을 行하고
 있는 生産者의 支店, 또는 營
 業所를 말함.

「2 生産者設立의 販賣會社等」: 生産者가 自社製品을 專屬的으
 로 流通 販賣하기 위하여, 自
 會社 또는 關聯會社로서 設立
 한 會社를 말함.

「3 一般都賣店」: 「1 生産者의 支店·營業所等」, 「2 生産
 者設立의 販賣社會等」 및 「4 其他의
 都賣店」以外 小賣商店 또는 其他 都賣
 商店에 商品을 販賣하고 있는 所謂 一
 般都賣店을 말함.

「 4 其他都賣店 (農協連鎖店 · 生協連鎖店 · 슈퍼체인本部) 」 :

農協協同組合, 生活協同組合 等으로 小賣店 또는 都賣店에 販賣하고 있는것, 혹은 체인스토아 本部를 말함.

(라) 「 4 從業者數 」

4 從業者數 ○ 個人業主, 家族從事者, 有級役員, 常時雇傭者의 合計를 記入한다. 常時雇傭者란 期間을 定하지 않은 또는 1個月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雇傭하고 있는 것을 말함.

(1) 이 店舖의 從業者數

(2) 企業全體의 從業員者數 (單獨店舖의 境遇는 記入할 必要가 없음)

人

1. 1人~ 9人 1. 20人~ 99人

2. 10人~ 19人 2. 100人以上

(a) 「(1)이 店舖의 從業者數」欄에는, 그 店舖에 現在 所屬되어 있는 從業者數를 記入한다.

但, 3個月 以上の 長期缺勤者, 休職者는 包含하지 않는다.

- 個人經營의 境遇는 個人業主, 家族從事者, 常時雇傭者의 合計를 記入한다.

- 個人經營의 境遇는 有級役員, 常時雇傭者의 合計를 記入한다.

〈家族従事者〉

個人業主의 家族으로서, 別途로 賃金이나 給料를 받지 않고 평소 店舖의 일을 돕고 있는 者를 말함.

〈常時雇傭者〉

그 店舖에서 常時 雇傭되어 있는 者로, 期間을 定하지 않거나 또 1個月 以上の 期間을 定해서 雇傭되어 있는 者를 말함.

臨時, 日雇, Part time, 아르바이트라는 名稱의 者라도 上記의 條件과 같으면 常時雇傭者에 包含한다.

(b) 「2 企業全體의 從業者數」

- 適合한 區分の 番號에 0 表示 한다.
- 「2 本所·支所別」欄으로 「1 單獨의 店舖」에 해당하는 店舖는 記入할 必要가 없다.
- 2本所·本社·本店, 支所·支社·支店等 外에 工場, 營業所, 出場所等에 雇傭되어 있는 企業全體의 從業者數에 따라 記入한다.

(마) 「5 同一 都道府県內에의 販賣比率」

5 同一 都道府県內의 販賣比率	이 店舖에 대한 過去1年間の 總 販賣額을 定하는 比率을 記入한다. <u>約 割</u>
------------------	---

店舖에 있어서 過去1年間の 總販賣額 가운데, 店舖의 所在하는 都道府県內에의 販賣額의 定하는 比率을 記入한다.

(바) 「 6 決濟方法 」

6 決濟方法	買入 { 主로 現金 主로 어음 販賣 { 主로 現金 主로 어음
--------	--

(a) 店舖의 通常 去來에 의해 買入, 販賣別로 適合한 區分의 番號에 0表 한다.

(b) 「主로現金」에는 手票에 의한 決濟도 包含한다. 또 「每月 25日 마감으로 翌月 5日에 現金支拂」라고 하는 境遇도 包含한다.

(c) 決濟의 方法이 決定되어 있지 않은 境遇는, 最近 1個月間에 件數가 가장 많은 것에 對해서 記入한다.

(사) 「 7 取扱商品의 種類 」

7 取扱商品의 種類	()內에는 이 店舖의 過去1年間の 總販賣額中 占有하는 %를 記入한다.
예컨데 紳士服, 寢具類, 調味料, 醫藥品, 家庭用, 電子機器等과 같은 販賣額의 많은 順으로 記入한다.	1. (約 割) 3.
	2. 4.

(a) 店舖에서 取扱하고 있는 商品 가운데, 過去1年間の 總販賣額에 占하는 比率이 큰 것부터 次例順으로 4가지까지 記入한다.

(b) 販賣額이 가장 많은 것에 對해서는 總販賣總中 占有하는 比率을 () 內에 記入한다.

(아) [連絡線]

連 絡 線	
電話 ()	番
交換	姓名

調査事項에 對해서 照會할 境遇가 있으므로, 店舖의 電話番號 및 記入者의 姓名을 記入한다.

(2)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

【 調査員이 記入하는 欄 】

○ 店舖訪問前에 記入하는 欄

市 區 町 村 番 號	調 查 員 番 號	店 舖 番 號

店舖調査票와 同一한 要領으로 店舖名簿에서 「 調査員番號 」 및 「 店舖番號 」를 記入한다.

【 店舖가 記入하는 欄 】

調査票에 記入되어 있는 商品에 對해서 「 2 販賣價格 」欄부터 「 6 販賣價格의 割引狀況 」欄까지 記入한다.

(가) 「 2 販賣價格 」

2 販賣價格

- 10月21일부터 31日 사이의 去來件數가 제일 많았던 實際 販賣價格을 記入함.
- 賣買基準價格이 아니고 割引한 境遇는 그 實際價格을 記入하고, 同一商品添附(數量割引)의 境遇는 添附分을 包含해서 單位當價格을 錢單位까지 記入한다.

單位	販賣處		
	(1)	下位都賣商	원
	(2)	百貨店	
	小	수	퍼
	매	量販專門店	
	족	一般小賣店	

- (a) 10月21일부터 31日까지의 이루어진 去來의 種類別로 記入한다. 더우기 이 期間에 去來가 없었을 境遇에는, 10月中旬 또는 10月上旬의 販賣價格을 記入한다.
- (b) 下位 都賣商으로 百貨店, 수퍼, 量販專門店, 一般小賣店쪽으로 去來量이 가장 많았던 販賣價格을 記入함.
- (c) 調査票에 쓰인 單位當價格을 記入한다.
- (d) 賣買基準價格이 아니고 實際 販賣한 價格을 記入한다.

「 實際價格 」이란 다음과 같은 價格을 말한다.

가. 現金 割引의 境遇 : 去來에 있어 에누리한 境遇를 말하며, 에누리後의 價格을 말함.

나. 일단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것 : 去來때, 後日 一定比率(正率 또는 去來數量에 相應하는 累進率等)을 現金의 反還함에 따라 實質的인 割引을 하는 境遇를 말함.

예컨대, 즉석면 1負袋當, 1원 되돌려 줄 境遇나, T.V를 5대 販賣함에 따른 販賣價格의 2%를 現金으로 되돌려 주는 境遇 등이 이에 該當함. 이 境遇에는 1원 또는 2%를 控除한 價格을 記入한다.

다. 同一商品添附(數量割引)의 境遇: 去來때 販賣하는 商品과 同一의 商品을 添附(追加)하여 實質的으로 割引을 하고 있는 境遇를 말함.

예컨대 인스탄트커피를 2타스 販賣하였을때, 無料로 4個追加하는 境遇등이 이에 該當한다. 이 境遇에는 販賣價格을 28個(24個+4個)를 나눈 價格을 記入한다.

(나) 「3 販賣數量」

3 販賣數量

- 過去1個月간의 數量을 販賣處別로 記入한다.
- 販賣數量에는 委託販賣도 包含한다.

(a) 商標別로, 過去1個月間에 販賣數量을 下位都賣쪽으로 百貨店, 수퍼, 大量專門店, 一般小賣業別로 調査票에 쓰인 單位를 記入한다.

(b) 商標 및 販賣選別로 記入할 수 없을 境遇, 總販賣量부터 追加해서 記入한다.

(다) 「4 主된 去來處」

<p>4 主된 去來處</p> <p>· 去來에 對해서 適合한 答의 番號 하나에 0 表 한다.</p>
<p>1. 生産者 (支店·營業所等 包含)</p> <p>2. 生産者設立의 販賣會社等</p> <p>3. 一般都賣店</p> <p>4. 其他 都賣店 (農協聯·生協聯等)</p>

○ 適合한 區分의 番號 하나만 0 表 한다.

(a) 「1. 生産者」란 製造를 하고 있는 企業, 本所·本社·本店 및 支社·支店·支所·營業所等を 말함.

(b) 「2. 生産者設立의 販賣會社等」이란 製造를 行하고 있는 企業이 自己業製品의 販賣를 위하여 設立한 販賣會社를 말함.

(c) 「3. 一般都賣店」이란 「1. 生産者」, 「2. 生産者設立의 販賣會社等」, 「4. 其他 都賣店」 以外의 一般都賣店舖를 말한다.

(d) 「4. 其他都賣店」이란 農協의 聯合組織, 生協의 聯合組織, 單獨의 農協 및 生協 등을 말한다. 체인本部도 이에 包含한다.

(라) 「5 주로 買入되는 都道府縣名」

<p>5 주로 買入되는 都道府縣名</p> <p>· 實際 去來한 事業所가 所在한 都道府縣名을 記入한다.</p>
<p>都道 府縣</p>

(a) 商標마다 實際 去來한 事業所 가운데 買入數量이 가장 많은 事業所가 所在하는 都道府縣名을 記入한다.

(b) 주로 輸入하고 있는 境遇는 外國이라고 記入한다.

(마) 「 6 販賣價格의 割引狀況 」

<p>6 販賣價格의 割引狀況</p> <p>· 適合한 答의 番號에 0表 한다.</p>
<p>1. 現金割引</p> <p>2. 되돌려줌 (리베트等)</p> <p>3. 數量割引</p> <p>4. 其他割引</p> <p>5. 割引없음</p>

○ 다섯種類의 割引狀況에 對해서 商標마다 適合한 區分의 番號 하나에 0表 한다. 더우기 「1. 現金割引」부터 「4. 其他割引」까지 割引한 境遇의 割引方法을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a) 「1. 現金割引」이란 買受가 一定期間內에 迅速히 支拂한 境遇. 商品代金を 싸게 하는 方法을 말함.

(b) 「2. 되돌려줌 (리베트等)」이란 商品의 去來가 높아짐에 去來相對에 支拂한 營業利潤의 配分을 말함.

(c) 「3. 數量割引」이란 大量으로 買入한 것에 대해 數量에 따라 割引하는 것을 말함.

(d) 「4. 其他의 割引」에 包含되는 割引方法에도 예컨대 比타 민제를 販賣할 境遇, 삼푸를 끼워서 販賣하는 境遇를 말함.

라. 調査票內容檢査의 要點

事 項	檢 査 要 點	處 理 方 法
(店舖調查票 關係) 「 2 本所·支所別 」	① 어느것이든 하나에 0 表示되어 있는가 ② 店舖의 名稱이 ○○支所 (支社, 營業所等)로 記入되어 있고 「 1 單獨店舖 」 또는 「 本所·本社·本店 」에 0 表示되어 있는가	· 記入漏落의 境遇 店舖責任者에게 記入하게 한다. · 店舖責任者에게 確認을 하고, 錯誤가 있으면 訂正한다.
「 3 店舖의 形態 」	① 어느것이든 하나에 0 表되어 있는가 ② 本所·支所別로 「 1 單獨店舖 」 또는 「 2 本所·本社·本店 」에서 店舖의 形態가 「 1 生産者의 支店·營業所等)에 0 表示되어 있지 않은가	上 同
「 4 從業者數 」	① 「(1)의 店舖의 從業者數」欄에는 모든 店舖에 대해 記入되어 있는가 ② 本所·支所別로 「 1 單獨店舖 」에 記入되고 있고 「(2)企業全體의 從業者數」欄에 0 表示 되어 있지 않은가 ③ 企業全體의 從業者數가 店舖의 從事者	"

事 項	檢 査 要 點	處 理 方 法
	數보다 적다고 하는 것이 없는가	
「5 同一都道府 縣内の販賣比率」	모든 店舖에 대해서 販賣額 比率이 記 入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記入漏落의 境遇 店舖 責任者에게 記入하게 한다. ・店舖 責任者에게 確認을 하고 錯 誤가 있으면 整 正한다.
「6 決済方法」	어느것이든 하나에 0 表示되어 있다.	上 同
「7 取扱商品の 種類」	「7. 取扱商品の 種類」欄의 어느것에 記入되어 있는가	”
(價格調査票 關係) 「2 販賣價格」 및 「3 販賣數 量」	① 記入된 販賣價格에 對應하는 販賣數 량이 記入되어 있는가 ② 販賣價格 및 販賣數量은 定해진 單 位當의 것인가 아닌가. 特히 販賣數 량이 큰 境遇는 期間, 單位를 錯誤 하고 있지 않은가 ③ 下位都賣쪽의 販賣價格은 一般的으로 小賣쪽의 販賣價格보다 싸다고 생각	”

事 項	檢 査 要 點	處 理 方 法
	<p>되지마는 下位都賣쪽의 販賣價格이 極段的으로 높게 되어 있지 않는가</p>	
「 4 主된買入」	<p>① 어느것이든 하나에 0表示 되어 있는가</p> <p>② 店舖調査票의 「 3 店舖形態」欄이 「 1 生産者의 支店・營業所等」 또는 「 2 生産者設立의 販賣會社等」의 境遇, 「主된買入」이 「一般都賣店」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 어떤가.</p>	<p>・記入漏落의 境遇 店舖責任者에게 記入하게 한다.</p> <p>・店舖의 責任者로부터 確認을 받으며 錯誤가 있으면 訂正하고 錯誤가 아닌 境遇는 「買入錯誤 없음」이라고 餘白에 記入한다.</p>
「 5 主된買入의 都道府縣名」	<p>① 모든 店舖에 대해서 都道府縣名이 記入되어 있는가</p> <p>② 하나의 商標에 대해서 都道府縣名이 2 縣以上 記入되어 있는 일이 없는가.</p>	<p>・記入漏落의 境遇 店舖責任者에게 記入하게 한다.</p> <p>・店舖責任者의 確認은 去來가 많은 事業體가 있는 都道府縣名을 하나 記入함.</p>
「 6 販賣價格의 割引狀況」	어느것이든 하나에 0表示 되어 있는가	・記入漏落의 境遇 店舖責任者에게 記入한다.

付 1 都賣店舖 (事業所) 調査票 記入例

指定統計 第 108 號

1987 年 全國物價統計 調査

㉞

都賣店舖 (事業所) 調査票

1987 年 11 月 9 日

總務廳統計局

이 調査票는 課稅等 統計以外的 目的에는 使用하지 않음으로 事實 그대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市區町村番號	調査員番號	店舖番號	抽出區分番號

○ 아래 番號에 表示된 核當欄에 ○表를 하여 주십시오.

1. 店舖의 名稱	法人	連絡先 電話 () 番 交換 代名				
2. 本所·支所別	1 單獨店舖 2 本所·本社·本店 3 支所·支社·支店·營業所 等					
3. 店舖의 形態	1 生産者의 支店·營業所 等 2 生産者設立의 販賣會社 等 3 一般都賣店 4 其他 都賣店 (農協連, 生協連, 슈퍼체인本部)					
4. 從業者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個人業主, 家族從業者 有給役員 當時雇傭者의 合計를 記入하십시오. 當時雇傭者란 期間을 定하지 않은 또는 1 個月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雇用하고 있는 者를 말함. (1) 이 店舖의 從業者數 (2) 企業全體의 從業者數 [單獨店舖의 경우는 記入할 必要가 없음) <table border="1"> <tr> <td>1. 1人~ 9人</td> <td>3. 20人~ 99人</td> </tr> <tr> <td>2. 10人~ 19人</td> <td>4. 100人 以上</td> </tr> </table>	1. 1人~ 9人	3. 20人~ 99人	2. 10人~ 19人	4. 100人 以上	
1. 1人~ 9人	3. 20人~ 99人					
2. 10人~ 19人	4. 100人 以上					
5. 同一都道府県内의 販賣割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店舖에 對한 過去 1 年間の 總販賣額을 占하는 比率을 記入하십시오. <p style="text-align: center;">約 割</p>					
6. 決濟方法	買入 [1. 主로 現金 2. 主로 어음 販賣 [1. 主로 現金 2. 主로 어음					
7. 取扱商品 種類 例 紳士服, 寢具類 調味料, 缶詰類, 醫藥品 等 販賣額이 많은 順으로 記入하십시오.	() 內에는 이 店舖의 過去 1 年間の 總販賣額中 占有하는 比率을 記入한다.					
	1 (約 割) 3					
	2 4					

[調査員記入欄]

가. 配布한 調査票 番號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나. 回數한 調査票 枚數						枚	備考								

指定統計 第108號

都賣價格·數量等 調査票

㉞

이 調査票는 課稅等 統計以外의 目的에는 使用하지 않음으로 事實 그대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總務廳 統計局

1987年 1月9日

市區町村番號	調査員番號	店舖番號
×××××	0 1	1 0

41	郎 席 麪
----	-------

1. 商品名 • 이 欄에 쓰는 자기의 商品마다 2欄부터 6欄까지 記入합니다.		2. 販賣價格 • 10月21일부터 31日사이에 있어서 去來件數가 제일 많았던 實際 販賣價格을 記入합니다. • 基準價格이 아니고 割引한 境遇에는 그 實際價格을 記入하고 同一商品添付(數量割引)의 境遇는 添付分을 包含하여 單位當 價格을 錢單位까지 記入합니다.		3. 販賣數量 • 過去 1個月間의 數量을 販賣先別로 記入합니다. • 販賣數量은 委託販賣도 包含합니다.		4. 主된 去來處 • 買入에 對해서 適한 答의 番號에 ○表를 합니다.		5. 主로 買入되는 都道府縣名 • 實際 去來한 事業所가 所在한 都道府縣名을 記入합니다.		6. 販賣價格 割引狀況 • 適한 答에 ○表를 表示합니다.	
포대들이 JAS規格品	사포르 제일 된장라면	符號	單位	販賣處	55 円 50	10,000 袋	① 生産者(支店·營業所 包含) 2. 生産者 設立의 販賣會社等 3. 一般都賣店 4. 其他 都賣店(農協連, 生協連等)	○ ○ 都道府縣	① 現金割引 2. 되돌려줌(리베드等) 3. 數量割引 4. 其他 割引 5. 割引없음	(1) 下位都賣쪽	
		小賣 賣 쪽	1 袋	(2) 百貨店							
				슈퍼							
				量販專門店							
				一般小賣店							

Ⅲ. 1984年 專門職 및 機關別서어비스業센서스

專門職 및 機關別 서어비스업 센서스

1. 調査要綱

個人서어비스業에 대한 專門職 및 機關別 事業體 센서스는 1984年을 對象年度로 하여 1985년부터 1986년에 걸쳐 實施되었다.

이 센서스는 個人서어비스業 部門中 8個 專門職과 2個 機關別 分類로 限定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專門職別

- (1) 會計士 (Accountants)
- (2) 建築士 (Architects)
- (3) 齒科醫師 (Dentists)
- (4) 醫 師 (Doctors)
- (5) 技 師 (Engineers)
- (6) 辯護士 (Lawyers)
- (7) 測量技師 (Surveyors)
- (8) 獸醫師 (Veterinary Surgeon)

- 機關別

- (1) 私立學校 (Private Schools)
- (2) 私立病院 및 助産所 (Private Hospitals & Maternity Homes)

이 센서스는 주로 郵便調査 方式을 택하여 郵送된 調査票로 蒐集함.

各事業體로 부터 蒐集된 이 資料는 特히 所有權, 法的組織形態, 收入額, 支出額, 雇傭, 賃金, 資産 및 職種別 從業員에 대한 資料를 收錄함.

一般的으로 이 報告書를 위하여 該當하는 事業體마다 主要 統計 值 즉 地位別, 法律關係別, 所有關係別, 收入規模別, 固定資産規模別, 從業員職種分類別의 7 가지 基本表를 提供하였다.

專門職 및 機關別 事業體 센서스는 아래와 같이 1984年 調查對 象年度에 運營되는 總 6,765 個 事業體를 調查하였다.

產 業	事 業 體 數
- 會 計 士	731
- 建 築 士	318
- 建物製圖士(圖案用, 立案者)	198
- 齒科醫師 I	372
- 齒科醫師 II	284
- 醫 師	1,338
- 技 師	325
- 辯 護 士	989
- 測量技師	338
- 獸 醫 師	44
- 私立學校	1,726
- 私立病院 및 助産所	102
總	6,765

2. 調査範圍

(1) 會計士 (Accountants)

다른 사람을 위하여 自己 自身の 計定으로 計算하거나 書類를 保管, 會計監査等 會計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體

(2) 建築士 (Architects)

設計, 圖案 等 建築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體로 아래와 같이 2 가지로 分類된다.

a) 建築設計士 (Architects)

1967 年에 制定된 建築法에 의하여 建設部에 保管된 建築士 記録部에 A 部門으로 記録된 사람들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는 事業體

b) 建築圖案士 (Building Draughtsmen)

1967 年에 制定된 建築法에 依하여 建物圖案士 記録簿에 收錄된 사람들에 의하여 運營되는 事業體

(3) 齒科醫師 (Dentists)

人造이빨, 또는 틀니를 製造하는 業體를 包含하여, 齒科醫料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體로서 두가지 그룹으로 分類함.

a) 齒科醫師 I (Dentists I)

1971 年에 制定된 齒科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I 部門의 記録簿에 收錄된 사람들에 의하여 運營되는 事業體

b) 齒科醫師 II (Dentists II)

1971 年에 制定된 齒科에 關한 法律에 對하여 II 部門의 記録簿에 收錄된 사람들에 의하여 運營되는 事業體. 이러한 事業體를 運營하는 사람들은 正常的으로 學士證을 갖지않고 齒

科醫師로 登錄되어져 있으나, 이러한 職業行爲를 許容하고 있다.

(4) 醫 師 (Doctors)

1971 年에 制定된 醫療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말레이시아 醫療協會에 記錄된 사람들에 依하여 運營되는 事業體로서 醫療 및 外科專門醫, 內科醫師, 物理治療師, 放射線師 및 그밖의 다른 專門 또는 類似醫料 開業醫가 이에 屬한다.

(5) 技 師 (Engineers)

1967 年 技術者 管理法에 7.(I)部門에 記錄된 사람들에 依하여 運營되는 事業體로 相談技師나 技術研究 및 開發, 檢査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을 包含한다.

(6) 辯護士 (Lawyers)

1967 年 法律專門家 關係法 166, 말레이시아 法律關係法 85(1)에 該當하는 個人 辯護士 記錄簿에 收錄된 사람들에 依하여 運營되는 事業體

(7) 測量技師 (Surveyors)

1958 年 土地測量 免許法, 1967 年 計量測量士法, 1981 年 評價士 및 鑑定士 關係法에 依據 個別的으로 維持되고 있는 土地測量委員會, 計量測量委員會, 評價 및 鑑定委員會에 收錄된 사람들에 依하여 運營되는 事業體

(8) 獸醫師 (Veterinary Surgeons)

1974 年 獸醫師 關係法에 의거 設立된 獸醫協會에 收錄된 사람들에 依하여 運營되는 事業體

(9) 私立學校 (Private Schools)

學術, 職業, 商業等 教育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體로 私立大學, 私立 初·中·高等學教, 技術, 職業 및 商業學校를 말한다. 또한 幼稚園과 通信學校도 이에 包含한다.

(10) 私立病院 및 助産所 (Privats Hospitals and Maternity Homes)

主로 患者의 治療를 돕기 위하여 限定된 綜合病院, 專門病院, 療養所, 防疫所, (保護) 收容所, 再生센터 및 類似健康 機關으로 醫療, 外科, 放射線 및 臨床서비스를 提供하는 保健省에 登錄된 事業體

3. 構造

이 센서스는 基本들은 政府部署, 專門職業協會 및 委員會에서 提供한 目錄으로 編輯되었다. 主된 提供處는 다음과 같다.

專門職別 / 機關別	資 料
1. 會計士 (Accountants)	- 말레이시아 會計士會 - 말레이시아 C.P.A協會
2. 建築士 (Architects)	- 말레이시아 建築委員會 - 말레이시아 建築士의 工務部
3. 齒科醫師 (Dentists)	- 保 社 部 - 齒科醫師 記錄簿 - 말레이시아 齒科醫師 協會 - 齒科醫師 聯盟 - Sabah 醫療記錄簿 - Sarawak 醫療部

專門職別 / 機關別	資 料
4. 醫 師 (Do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 社 部 - 말레이시아 醫師協會 - Sabah 醫療記錄簿 - Sarawak 醫療部
5. 技 師 (Engine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技師委員會 - 말레이시아 技師協會 - 말레이시아 公認技師會 - 말레이시아 鑛物工學會 - 말레이시아 顧問技士委員會
6. 辯護士 (Lawy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等法院 記錄簿 - 辯護士協會 記錄簿 - 말레이시아 法律出版業者會 - Sabah 正義部 - Sarawak 官報告示文
7. 測量師 (Survey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土地測量委員會 - 말레이시아 計量測量委員會 - 말레이시아 測量師會 - 말레이시아 評價 및 鑑定委員會 - Sabah 土地 및 調查部 - 工 務 部
8. 獸醫師 (Veterinary Surge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獸醫協會 - Sabah 獸醫部
9. 私立學校 (Private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 教 部 - Sabah 教育部 - Sarawak 教育部

專門職別 / 機關別	資 料
10. 私立病院 및 助産所 (Private Hospital And Maternity Homes)	- 保 社 部 - Sabah 醫療部 - Sarawak 醫療部

또한 當局에서 實施되는 認可 貿易事業體 센서스 目錄을 利用하였고 當局의 事業體 리스트와 電話番號簿의 職業別 리스트를 活用하였다.

4. 調査方法

이 센서스는 當局에서 主로 經濟調査를 實施하기 위하여 設計된 簡易調査票를 使用하였다.

앞서 例示한 여러가지 出處로 부터 蒐集된 總 8,130 個業體가 이 센서스의 郵便調査 對象에 包含되었으며, 1985年 5月頃에 말레이지아 全域에 總 7,006 個의 調査票를 郵送하여 1 個月의 調査期間(應答者 作成 및 回信期間包含) 주었으나, 마감날인 1985年 7月 1日에는 全 調査票의 24.1%만이 回信됨. 그 後 한달 間隔으로 未應答者에 대하여 調査票를 再發送(再調査) 하며 1985年末頃에 64.7%로 回收率을 높힘.

그러나 再 독촉에도 不拘하고 35.3%의 많은 事業體가 調査票를 提出하지 않아 當局에선 1985年 10月부터 一線調査員이 直接 訪問(Field Survey)하여 調査票를 回收하였으며, 이렇게하여 이 센서스 終了시 98.3%의 事業體를 調査하였다.

Sabah 와 Sarawak 주 政府는 이와 비슷한 調査方法을 活用했으나 그러나 郵送時期, 센서스의 終了時期, 一線 調査事務, 期間이 다름.

센서스 마감으로 回收된 調査票는 다음과 같다.

應 答 範 圍	事 業 體	
	數	%
- 營業中 : 提出된 調査票 資料處理된 調査票	7,188	88.4
	6,765	83.2
- 休 業	221	2.7
- 閉 業	201	2.5
- 産業分類 錯誤	52	0.6
- 總 應答者數	8,078	99.4
- 調査不應 調査票	52	0.6
總 郵送 調査票	8,130	100.0

이렇게 하여 蒐集된 調査票를 通하여 結果內容의 程度를 提高키 爲하여 資料處理中 繼續하여 Editing 을 하였고, 資料內容이 不合理的인 調査票는 이 過程에서 質疑照會를 實施하였다. 이러한 作業에도 不拘하고 內容이 不適切한 調査票는 資料處理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質疑照會가 迅速하지 않은 事業體에 대해서는 Field Survey 를 實施하여 調査票를 完全하게 하였다.

Data 處理는 컴퓨터를 利用하였으며, 蒐集된 Data 는 資料處理要領에 의한 컴퓨터로 Check 하여 確認하였다. Data 處理期間은 約5 달 程度이며 結果表는 Data 活用可能한 날로부터 2 週後에 作成됨.

5. 調査對象期間

調査期間이나 센서스 報告期間은 Calendar year 로 1984 年이다.

비록 一部 事業體들이 단지 會計年度基準에 따른 資料를 提供할 수 있을뿐 이지만, 대부분 事業體들이 自體 會計年度로서 Calendar year 를 使用하고 있다. 前者의 境遇에 있어서 비록 會計年度가 Calendar year 와는 단지 2, 3 個月 내지는 6 個月程度 달리하고 있었지만, 一般的으로 會計年度 單位로 認定되어지고 있다.

6. 機密維持

이 센서스는 1965年 統計法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되며, 그 法은 統計機關이 個別 報告資料를 直接 間接으로 利用하는것을 禁止하기 위한 것임.

이 報告書에 있는 모든 情報은 이와같은 要請에 의하여 提供되어 지는데 結果的으로, 報告書內의 統計數值들은 個別 事業體에 대한 機密 漏泄의 危險을 防止하기위한 方法으로서 集計되어졌다.

7. 統計單位 (調查單位) - “ 事業體 ”

이 센서스에 適用된 統計的 單位는 “ 事業體 ”이다. UN 統計局에서는 “ 單一 所有體制 또는 統制하에 同一한 物理的場所에서 하나 또는 主된 經濟活動에 從事하는 經濟的 單位 ”로 定義한다.

8. 概念定義

이 센서스에 使用된 몇 가지 主要한 概念을 아래와 같이 定義함.

가. 雇 傭

調査年度 마지막 支拂期間 또는 12月 동안에 雇傭된 사람의 總數를 適用한다.

나. 雇傭者數

여기에는 調査年度 마지막 달의 俸給期間 또는 12月 동안에 經

營에 參與하고 있는 經營主, 積極的인 事業同業者, 無給家族從事者
를 包含한다.

그러나 管理委員會 會議에 參加하기 위하여, 단지 俸給이 支給
되는 非常勤 管理者는 除外하였다. 그리고 罷業中인 사람, 病家와
같이 短期 休養中인 사람, 年家 및 有給休家者는 調査對象에 包
含시켰지만 無期休暇者, 軍服務者는 除外시켰.

다. 事業主

事業體의 經營에 實際的으로 從事하는 (個別事業主 및 同業者)
法律的으로 實質的인 所有者를 말함.

라. 積極的인 事業同業者

事業管理와 統制下에 積極的으로 從事하는 同業者를 말함.

마. 無給家族從事者

正常勤務時間의 最小한 1 / 3을 特別한 期間에 勤務하면서 일
의 댓가로 現金이나 다른 形態로 支拂받지 아니한 사람, 물론 이
러한 雇傭員은 經營者 家計의 一部로서 扶養, 保護, 飲食을 提供
받지만, 이러한 것은 그들이 그 事業體에서 일을 돕는 有無와는
關係가 없음.

바. 常用勤勞者

俸給이나 賃金を 위하여 實質的 期間以上 事業體에서 正常時間
勤務하는者를 말하며, 여기에는 作業의 댓가로 報酬를 받는 經營
者나 管理者는 包含하나, 단지 委員會 會議 參席만으로 謝禮金を

받는 管理者는 除外된다.

사. 時間報酬勤務者

實質的인 期間에 걸쳐 每月 正常的으로 雇傭되어 있지만 實際로 每日 勤務하거나 하루종일 일하지 않은 從事者, 普通 이들은 하루 6時間以內 또는 한달 20日 以內로 勤務한다.

아. 俸給 또는 賃金額

當該年度 業務와 關聯하여 事業家, 雇傭者에게 支拂하는 모든 報酬에 該當한다. 여기서 報酬額이라 함은 보너스, 手數料, 時間外手當, 生計費手當, 그밖에 다른 手當이 包含되나, 雇傭者의 E.P.F 또는 會社保障(SOCSO)制度 또는 그밖에 다른 保護基金은 除外한다.

자. 收 入

專門職의 收入額을 構成하는 主要項目들은 專門서비스의 提供으로부터 받은 手數料, 管理로부터 받은 手數料, 建物賃貸料 또는 割引料와 利子, 그리고 利益配當金이다. 機關의 경우에는 機關에 의해 받은 手數類, 賃貸料, 收入, 割引料와 利子, 配當金, 送金額, 補助金, 寄附金, 贈與金, 加入金과 入場料 等 會員으로부터 받은 會費等이 이에 該當된다.

차. 經 費

經費의 主要項目들은 水道料, 電氣料, 燃料費, 備品費, 現金 및 다른 形態로 支給된 賃金 및 俸給, 社會保障寄附金, 事業體 固定資

産에 대한 修理 및 維持費, 非産業서어비스財의 購入費, 減價償却費 및 間接稅 등이 이에 該當된다.

카. 固定資産

耐用年數가 1年以上인 새로운 것이나, 使用된 모든 物品(土地, 建物, 機械, 裝備 등). 그 價値는 會計帳簿에 따라 當該年度 末 經에 評價됨. 年度中 追加된 物品은 包含하고 處分한 것은 除外. 그것은 純 減價償却 임.

다. 所有權

應答者에게 株主의 國籍보다는 所在地에 關聯하여 事業體의 所有狀態를 陳述하도록 要請하였다. 所在地에 대한 所有는 拂入資本 價値에 의하여 株式의 50%以上을 所有한 株主의 居住狀態를 意味한다.

말레이시아 居住者와 非居住者가 同等한 株式을 所有한 경우 그 事業體는 共有 所有로 分類된다. 말레이시아 居住者란 말레이반도, Sabah 와 Sarawak 에 사는 사람이나 所在하고있는 會社 또는 機關을 말하며, 비말레이시아 居住者란 말레이시아 以外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이나 所在하는 會社 또는 機關을 말한다.

파. 法的組織形態

이 센서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7個 組織으로 分類하였다.

- (1) 個人業主
- (2) 同業者

- (3) 私的有限會社
- (4) 公的有限會社
- (5) 協同組合
- (6) 公共法人
- (7) 非法人 團體

(1) 個人業主

個人所有로서 自身の 利益을 위해 運營되는 事業으로, 所有者는 事業은 運營키 위하여 排他的인 權利를 갖음 .

(2) 同業者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事業運營을 위하여 同意한 사람이나 契約된 個個人의 그룹. 이러한 事業은 모두다 運營하거나 또는 모두를 代表하는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管理되기도 한다.

貿易去來에 있어서 同業者는 2人 以下나 20人 以上으로 構成될 수 없다.

(3) 私的有限會社

다른것들 중에서 定款 또는 協同組合에 있어서 私的有限會社는

- 株式移轉의 權利가 制限되고
- 會社從業員數가 50名으로 制限되며 (會社員 및 被雇傭者)
- 會社의 株式이나 私債를 公募할 수 없고
- 一定期間동안 會社에 돈을 預託기 위하여 公募하거나, 利子 의 有無를 不問하고 要求에 즉시 支拂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4) 公的有限會社

公的有限會社는 最小한 2人以上으로 設立되며, 株式은 證券去來所에 登錄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이 讓渡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協會의 規定에 따름

(5) 協同組合

相互 協力을 통한 組合員들의 必要에 副應할 目的으로 構成員의 制限없이 募金된 基金으로, 自發적으로 組織된 聯合會다.

(6) 公共法人

國會 또는 州議會 特別法으로 設立된 企業

(7) 非法人團體

政府機關의 統制 및 全體 또는 主된 補助없이 教育, 健康, 文化, 娛樂 그리고 그밖의 社會서비스를 家計에 無料 또는 生産費에 못미치는 價格으로 提供하는 機關

또한 私的無限責任會社 等과 같이 위에서 言及한 어떤 範疇에도 屬하지 않은 다른 形態의 경우 事業體의 法律關係를 알기 위하여 “其他”라는 範疇를 要求함.

IV. 1984年 主要서어비스産業部門센서스

主要서비스 産業部門센서스

1. 調査要綱

말레이시아의 主要 서비스産業部門 센서스는 1984年을 調査對象年度로하여 1985年과 1986年에 걸쳐 實施되었으며 對象産業은 다음과 같다.

가. 船舶會社 (Shipping)

나. 不動産 仲介業 (Real Estate Agencies)

다. 버스運送業 (Bus Transport)

라. 택시運送業 (Taxi Transport)

마. 道路貨物運送業 (Road Haulage)

사. 旅行斡旋業 (Tourist And Travel Agencies)

아. 船舶仲介業 (Shipping Agencies)

자. 證券仲介業, 商品仲介業, 外換仲介業 (Stock Brokers, Commodity Brokers and Foreign Exchange Brokers)

차. 荷役業 (Stevedoring Agencies)

카. 廣告代行業 (Advertising Agencies)

타. 호텔 및 其他宿泊業 (Hotels and Other Lodging Places)

• 호텔 및 其他宿泊業 센서스는 처음 1971年 調査年度로 實施되었으며 1975 ~ 1985年동안 그 結果가 産業統計調査 (Industrial Survey) 의 年報에 包含되어있다.

• 택시運送業에 대한 調査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샘플을 基礎로 實施되었으며 그外 地域 (Sabah) 에서는 實施되지 않음.

- 센서스는 郵便調査를 必須로 情報는 郵便調査를 通하여 얻어지며, 調査內容은 個別上 業體로 부터 各各 蒐集하되 特히 所有關係, 法的組織形態, 收入額, 經費, 雇傭狀態, 月給與額, 固定資產等에 대한 資料가 包含된다.
- 一般的으로 이 報告書의 目的을 위해서는 단지 主要 統計를 技術하는 7個의 基本表(Table) 즉, 地位別, 法的組織形態別, 總雇傭規模別, 從業員의 職種分類別이 各 產業에 나타난다.

2. 調査範圍

서어비스 産業部門 센서스는 總 8,300 個 事業體에 調査된다(호텔 및 其他 宿泊業所 除外)

1984年 調査年度の 調査는 다음과 같다.

産 業	事 業 體 數 (個)
• 船舶會社	350
• 不動産仲介業	198
• 버스運送業	446
• 道路貨物運送業	5,626
• 映 畫 館	251
• 旅 行 社	757
• 船舶仲介業	282
• 證券仲介業, 商品仲介業, 外換仲介業	95
• 荷 役 業	148
• 廣 告 業	147
總 計	8,300

서어 버스產業部門에 대한 調査範圍는 다음과 같다.

1. 船舶會社 (Shipping Company)

이러한 事業體는 大洋이나 近海海洋 運送을 包含하나 內陸輸送은 除外됨

2. 不動産仲介業 (Real Estate Agencies)

이 事業體에는 不動産代理店, 仲介業, 運營業을 包含한다(즉 賃貸, 購入, 販賣 또는 다른사람에게 手數料를 받고 運營한다든지 契約에 의해 運營하든지간에)

3. 버스運送業 (Bus Transport)

여기에는 Stage Buses 를 運營한다든지 高速버스 미니버스를 運營하는 道路 輸送部에 登錄된 事業體를 包含한다. 단, 學校버스나 工場에서 運營하는 버스는 除外됨.

4. 택시運送業 (Taxi Transport)

여기에는 道路運送 免許機關에 택시運送 許可를 獲得한 事業體를 말하며, 그리고 그들 自身이 運營하거나 그들 自身の 許諾으로 他人이 運營하는 個人 事業主도 역시 包含된다. 말레이반도에는 11,290 個業體(母集團)중에 1,353 個業體를 標本抽出하여 調査 實施하였으며, Sanawak 에서는 雇傭人을 갖고 있는 事業主는 調査對象에서 除外됨.

5. 道路貨物運送業 (Road haulage)

여기에는 道路運送 免許機關에 의해서 公共運送許可를 받은 事業體를 말함.

6. 映畫館 (Cinemas)

여기에는 一般 映畫館을 包含하지만 移動式 活動寫眞 運營은 除外됨.

7. 旅行斡旋業 (Tourist and Travel Agencies)

旅行 및 觀光 代理店을 運營하기 위하여 許可證을 所持하고 있는 事業體를 調査함.

8. 船舶仲介業 (Shipping Agents)

船舶仲介業으로서 運營 免許를 取得한 事業體를 調査함.

9. 證券仲介業, 商品仲介業, 外換仲介業

(Stock Brokers, Commodity Brokers and Foreign Exchange Brokers)

여기에는 쿠알라룸프르 證券交換所에 登錄된 證券仲介業, 쿠알라룸프르 商品交換所에 登錄된 商品仲介業, 말레이시아 中央銀行에 登錄된 外換仲介業만 包含된다.

10. 荷役業 (Stevedoring Companies)

여기에는 商船으로부터 짐을 船積하거나 荷役을 主된 活動으로 하고 있는 事業를 包含함.

11. 廣告代行業 (Advertising Agencies)

여기에는 라디오, 雜誌, T.V, 포스터를 準備 및 提供, 廣告原稿를 作成하거나 商業的 技術作業과 같은 여러形態의 媒體로 顧客을 爲한 契約 서어비스 등이 包含된다.

그리고 이 센서스는 擔當部署에서 經濟統計調査 (Economic Survey)를 實施하기 위하여 獨自的으로 設計된 “ 簡易調査票 ”를 使用함으로써 實施되어졌다.

多様な 資料源에 의하여, 郵便調査對象 事業體數는 總 16,256 個이며 이중 13,110 個의 事業體가 1985 年 5 月末까지 郵送, 한달 동안의 應答期間을 주었으나 1985 年 6 월 1 째 주 단지 19.5%의 調査票만 回信을 받았을 뿐이다. 두번째 督促狀은 그후 非應答者를 對象으로 한달간에 걸쳐 調査 (郵便으로 郵送됨)되었으나 이렇게 하여 9 月 中旬頃에는 53.1%의 調査票가 回信되었다. 아직도 調査되지 않은 46.9%의 事業體는 最終的으로 擔當機關의 調査員이 Field Survey 를 實施하여 (1985 年 9 月부터 1986 年 4 月까지) 이 센서스가 끝날때쯤 87.3% 事業體를 調査하며, 이는 總事業體의 96% 정도에 이른다.

Sabah 와 Sarawak 는 이와 類似한 方法으로 實施된다. 그러나 郵便調査의 時期와 Field Work (直接訪問調査)와 센서스의 마감은 서로 다르다.

3. 調査構造

말레이지아 반도에서는 서어비스業 센서스의 構成은 最初 統計局

의 執行部에서 計劃을 세웠으며, 後에 職業別 電話番號簿의 該當리스트를 活用하여 每年 母集團을 修正 使用하였다. 그리고 事業體리스트는 運輸省(交通部)과 같은 政府部署, 道路運輸免許員 道路運輸局, 地方事務所, 觀光開發會社, 貿易産業性, 말레이지아中央銀行, 쿠알라룸푸르證券交換所, 商品交易員會, 港灣管理委員會, 情報省 및 認定된 廣告代行協會에서 역시 얻어졌으며, 이는 말레이지아의 더욱 完璧한 範圍를 補完케하였다.

Sabah에서는 서어비스 産業 센서스의 母集團을 許可된 貿易業體, 電話番號簿의 事業體面(Yellow Pages)에서, 그리고 行政部署의 營業리스트로부터 얻어지며, 附加하여 事業體리스트는 역시 貿易産業局, 港灣管理委員會 道路運送部署나, 海上運送, 말레이지아 中央銀行 등과 같은 政府部處로부터 얻어진다.

Sarawak에서는 그 情報는 許可된 交易事業體 센서스로부터 얻어지며, 역시 그 frame의 基本을 形成한다. 補完情報는 道路貨物運送業, 택시 및 버스會社등 陸上運送部署로부터 蒐集하며 船舶會社를 위해서는 運輸局에서 資料를 蒐集한다.

4 . 調査方法

센서스 調査後 14,527 個의 事業體가 回數되었으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서어비스業 센서스의 틀(母集團)에 構成되는 總 事業體數가 비록 16,256 個로 많은 事業體이었다 하더라도 報告書에 編製될시 全部다 包含되지 않음.

V. 1981年 基準 台灣의 都賣物價指數

I. 臺灣의 都賣物價指數

1. 年 革

臺灣의 物價統計는 1946年 2月에 始作되었다. 商品價格統計調查計劃에 따라 行政院 主計處의 統計本部에서는 1937年 上半期를 基準年度로서 單純算術 平均 公式을 採擇하여 50個 商品을 6個大分類로 臺北市의 都賣物價指數를 編製했다. 그리고 1949年 貨幣改革後 그해 6月과 1950年 上半期를 基準으로 臺北市의 都賣物價指數를 各各 編制하였다.

1954年 行政院 主計處에서는 關聯機關, 學者, 國內外關聯者들을 초대 會議를 實施한 結果 基準年度로서 1952年 全期間으로 새로운 指數를 編制키 爲해 基本的인 50個 商品으로부터 13個 商品을 代替키로 決定했다. 그리고 經濟開發計劃과 關聯 需要增加에 副應키 爲하여 1956年으로 基準年度를 改定했으며, 臺灣의 總商品 供給額을 加重值로 使用 1月에는 11個 大分類로 179個 商品의 指數를 公表하였다. 이것이 自由中國에서 라스파이레스 算式이 適用된 最初의 것이다.

臺北市가 臺灣地方으로부터 分離된 以來 1967年 7月에는 行政府의 直接指示下에 特別 自治市가 되었으며, 臺灣地域의 都賣物價指數는 臺灣地方과 臺北市에 依해 共同으로 編制되어 졌고 또한 1968年 1月에는 基準年度로서 1963年 - 1965年의 平均으로 322個 品目에 12個

大分類別로 새로운 指數가 公表되어졌다.

1970年동안 行政院 主計處에서는 共同編制의 난점을 克服하기 위하여 그 作業을 引受키로 決定했으며, 臺灣地域에 있어서 1966年의 去來額이 各各 基準年度와 加重值로 使用되어졌다. 그리고 品目은 586個, 大分類는 12個別로 1971年 1월에 指數가 作成 公表되어졌다. 이것이 自由中國에서 多様な 그룹의 指數를 그리고 指數의 編制를 위해 Computer로 試圖된 最初의 것임.

1974년에는 經濟成長과 生産構造의 變化를 比較하기 위하여 1971年을 基準年度로 改編했으며, 830個의 品目과 14個 大分類別 指數를 1974년에 公表하였고, 1977년에는 基準年度를 重化學工業의 發達과 마찬가지로 國內商品構造에 副應키 위해 1976年으로 改編과 同時品目數 925個, 大分類數는 24個로 增加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多様な 그룹의 指數과 동시에 再整備되었다.

現在 急激한 變化는 1981年을 基準年度로 紹介되어 왔지만 多様な 商品에 對한 總供給額이 加重值로서, 品目數도 1435個로 擴大되어졌다. 그리고 追加하여 加工段階別로 特殊分類指數를 1983年 7월에 公表하였다.

2. 目的 및 用途

가. 作成目的

臺灣地域에서의 現在의 都賣價格水準의 變動을 測定키 爲함.

나. 用 途

- (1) 財政經濟政策 決定을 위한 主要經濟指標 및 學術研究를 爲한 基本資料(參考資料)로 提供
- (2) 資産再平價 및 長期負債償還에 있어서 通貨價値의 參考資料로 活用
- (3) 國民所得統計中 國民生産의 固定貨幣價値를 推計하기 위한 基準으로서 活用

3. 調査品目

臺灣地域에서의 現在の 經濟構造에 依하여 1435個 個別商品 項目이 抽出되었다.

4. 指數分類

基本指數에 追加하여 用途別, 生産別, 産業別, 加工段階別, 産業別 中間原材料投入 및 産出別이 各各 使用者를 爲하여 編制되어짐.

5. 基準年度

1981年의 年間平均이 基準으로 使用되어짐.

6. 加重値

加重値 資料는 國內 生産物의 販賣價와 輸入價格을 합한 總供給 價格으로 蒐集되어 진다.

7. 價格資料

- 가. 價格調查地域：臺北市，高雄市，臺中市，臺灣市的 都賣市場，또는 關聯商品的 供給 Center 이다.
- 나. 價格調查日：每月 4日，14日，24日에 實地調查 實施
- 다. 報告單位：臺灣省 各縣市 政府 主計室 및 高雄市 政府 主計處의 負責 辦理查報.

8. 指數시산

가. 公 式

一般指數，그룹指數는 다음의 라스파이레스 算式에 依據 計算된다.

$$\begin{aligned} & - \text{各 地 域 平 均 價 格 化} : \frac{P_i}{P_o} = \frac{1}{m} \sum \frac{P_i}{P_o} \\ & - \text{指 數 算 式} : I_{oi} = \frac{\sum \frac{P_i}{P_o} P_o Q_o}{\sum P_o Q_o} \times 100 \end{aligned}$$

* $\frac{P_i}{P_o}$: 모든 地域에서의 주어진 商品에 對한 固定基準價格比

* m : 價格調查地域數 價格比

* $\frac{P_i}{P_o}$: 모든 商品에 對한 平均價格比

* $P_o Q_o$: 基準年度의 모든 商品의 總供給額

나. 價 格

- 每月 平均價格은 調査地域에 每月 3 回 實地調査하여 單純 算術平均하여 計算되어짐.
- 年間 平均價格은 每 地域에서의 年間 12 個月 單純算術平均하여 計算되어짐.
- 平均 價格比는 每 地域에서 月別 (年別) 平均 價格을 基準年度 結果로 나눔에 의해서 計算되어진다.

다. 指 數

月別 또는 年別 指數는 各各 年別, 月別, 價格比에 加重值를 適用함으로써 計算되어진다.

라. 品質 規格 變更에 對한 處理

- (1) 采蔬나 生鮮類와 같은 季節的인 商品에 對해서는, 利用可能한 地域에 對한 平均價格이 代身에 計算되어진다. 卽, 모든 地域에 利用 可能한 資料가 없다면 調査된 資料가 利用되어진다.
- (2) 日常 生活用品 중 商品의 브랜드 變更時 다음과 같은 調整에 의해 代身 使用되어진다.

$$\frac{\text{新品質規格 商品의 價格}}{\text{舊品質規格 商品의 價格}} \times \text{舊品質規格 商品의 基準時價格}$$

$$= \text{新品質規格 商品의 假想 基準時 價格}$$

마. 指數는 소수 둘째자리까지 숫자로 컴퓨터 計算하며, 실제 作業은 소수 여섯째 자리까지 正確하게 計算되어짐.

VI. 1981年 基準 台灣의 消費者物價指數

臺灣의 消費者物價指數

1. 年革

UNECAFE의 勸告案에 副應하여 經濟安定委員會, 經濟事務處와 協力하여 많은 統計專門家와 熟議한 끝에 臺灣地方의 主要都市 消費者 物價指數와 公務員의 生計費 指數를 統合하여 臺灣地方의 “都市 消費者物價指數”를 作成키로 決定하였다.

이 計劃을 遂行키 위하여 豫算會計 및 統計部處에서는 加重值 資料蒐集을 위하여 臺灣地方都市에서의 1954-1955年 俸給所得者에 對한 家計調査를 實施했으며, 또한 地方政府의 수차례 調査를 實施, 實際價格을 蒐集하였다. 1958年 7月에서 12月까지 6個月間의 指數가 150個 商品(品目)과 飲料品, 依類, 建物, 輸送, 通信, 保健 및 醫料, 教育 및 娛樂等 7個 大分類別로 라스파이레스 算式에 依據 編制되었으며, 그 編制作業은 1959年 1月 以來 繼續되어 왔음.

最近 臺灣地域에 있어서 經濟社會發展으로 原來指數가 經濟構造 및 消費形態를 더이상 代表할 수 없게됨에 따라, 1965年 統計部處에서는 改善計劃을 마련하였으며 약간의 修正으로 統計機構改善委員會 議에 受諾되어졌다.

1967年 1月부터 12月까지 指數는 舊指數를 代替키 위하여 公式的으로 編制되었으며 1968年 1월에 公表되었다. 그리고 臺灣地域의 都賣物價指數와 비슷하게 臺北市의 自治政府와 臺灣地方이 合同作業을 하기로 規定됨.

그리고 보다나은 比較를 위해 基準期間이 臺灣地域의 都賣物價指

數와 같은 期間에 使用되어졌으며, 그外에도 推計精度에 對한 改善과 下位分類에 對한 多樣한 指數編制가 1971年에 確立됨. 그리고 1976年 基準의 새로운 系列이 1978年 1月이래 公表되어왔음. 現在 1981年의 새로운 基準年度는 1981年 加重值로 1983年7月 에 作成된 것임.

2. 目的 및 用途

가. 目的

臺灣地域에 毎日 日常生活을 위하여 財貨 및 서어비스 購入價格에 對한 平均變化를 測定하기 위함.

나. 用途

- (1) 公共機關이나 個人事業體의 賃金 및 俸給調整을 위한 參考資料로 活用
- (2) 國民所得 統計의 編制를 위한 Deflator 資料로 活用

3. 調査品目

8個都市의 個別商品 및 서어비스에 對한 443個 項目과 8個地方에서의 298個 項目이 1981年 臺灣地域의 消費形態에 따라 抽出되어졌다.

4. 指數分類

指數編制는 다음과 같다.

- 가. 基本指數: 基本指數는 臺灣地域消費者 및 都市消費者物價指數로서 7個大分類, 44個中分類, 60個小分類 指數이다.

나. 複分類指數：2 個大分類， 7 個中分類， 19 個小分類指數가 商品의 性質別로 編制되었으며， 產出部門別로 5 個大分類， 16 個中分類， 27 個小分類로 編制됨.

5. 基準年度

1981 年 全年度 平均이며， 連結指數가 역시 編制됨.

6. 加重值

가. 그 地域平均價格比를 計算하기 위해서는 臺灣地域에 對한 價格 調查地域의 1981 年 人口比에 依하여 每月 加重值로서 使用되어졌다.

나. 1981 年 家計消費構造係數가 價格指數를 計算하기 爲한 加重值 資料로서 使用되어졌다.

7. 價格資料

가. 調查地域：基隆市， 臺北市， 新竹市， 臺中市， 嘉義市， 臺南市， 高雄市 花蓮市， 8 個都市 및 28 個懸이 價格調查地域으로 選定됨.

나. 價格調查日：基隆市等 8 個都市調查時는 每旬期 2， 5， 8 日이며 臺北懸等 8 個 調查懸은 每달 5 日， 15 日， 25 日에 實施함.

다. 調查擔當：各 調查地區 擔當懸(市)， 政府主計室(處)

8. 指數試算

가. 公式 : 라스파이레스式

$$- \text{價格比} : \frac{p_i}{p_o} = \frac{\sum \frac{p_i}{p_o} W_o}{\sum W_o}$$

* $\frac{p_i}{p_o}$: 주어진 基準商品에 對한 價格比

* W_o : 價格調査 地域에 의 人口

$$- \text{指數算式} : I_{oi} = \frac{\frac{p_i}{p_o} (P_o Q_o)}{P_o Q_o} \times 100$$

* $\frac{P_i}{P_o}$: 商品의 平均 價格比

* $P_o Q_o$: 한單位 商品에 對한 每家口의 平均消費額

나. 價 格

- (1) 10日 동안의 平均價格은 8個都市에서 計算되어짐.
- (2) 매달 平均價格은 모든 價格調査地域에서 計算되어짐.
- (3) 年間 平均價格은 모든 價格調査地域에서 計算되어짐.
- (4) 加重平均價格費는 全地域에 對한 適合한 加重值로 計算되어진다.

다. 指 數

月別 및 年度別指數는 各各 月別 및 年度別 價格比에 加重值
를 適用함으로서 計算되어짐.

라. 品質規格 變化에 對한 處理

商品에 對한 情報가 活用 不可能할시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采蔬類나 生鮮類와 같은 季節的인 商品은 以前調査된 資料를 代身 活用한다.

(2) 日常生活必需品중 어떤 商品에 對한 브랜드 變更時 다음의 調整에 의해서 代替된다.

$$\frac{\text{新品質規格商品의 價格}}{\text{舊品質規格商品의 價格}} \times \text{舊品質規格商品의 基準時價格} \\ = \text{新品質規格 商品의 假想基準時 價格}$$

마. 本指數에 對한 Computer 資料處理는 調査된 平均價格을 小數 2 째자리까지 사사오입 集計하여 (3 째자리에서 사사오입) 단 實際 指數 計算時에는 소숫점 6 째자리 正確히 集計되어진다.

〔附錄〕 蒐集資料目錄

蒐 集 資 料 目 錄

資 料 名	作成機管	備 考
-日本-		
(消費者物價指數)	總務廳 統計局	
• 1986年 消費者 物價指數 解說		
• 1985年 消費者 物價指數 (一般弘報用)		
• 1985年 基準消費者 物價指數 (全國)		
• 1985年 基準消費者 物價指數 彙報 (東京都)		
• 1986年 平均 消費者物價 地域差 指數		
(全國 物價 統計調查)	總理府 統計局	
• 1987年 全國物價統計調查 (廣告用)		
• " 調查要領書 (都賣調查用)		
• " " (小賣調查用)		
• " 市道事務 取扱要領		
• " 調查票記入要領 (都賣店舖用)		
• " " (小賣店舖用)		
• " 都買店舖調查票 (事業體用)		
• " " (價格 及 數量 等 調查票 55個 種類別)		
• " 小賣店舖調查票 (事業體用)		
• " 小賣價格調查票 (108個 種類別)		

資 料 名	作 成 期 間	備 考
• 臺灣指數 都賣物價 價格調查票		
• " 新規項目 調查票		
• " 都市消費者物價調查票		